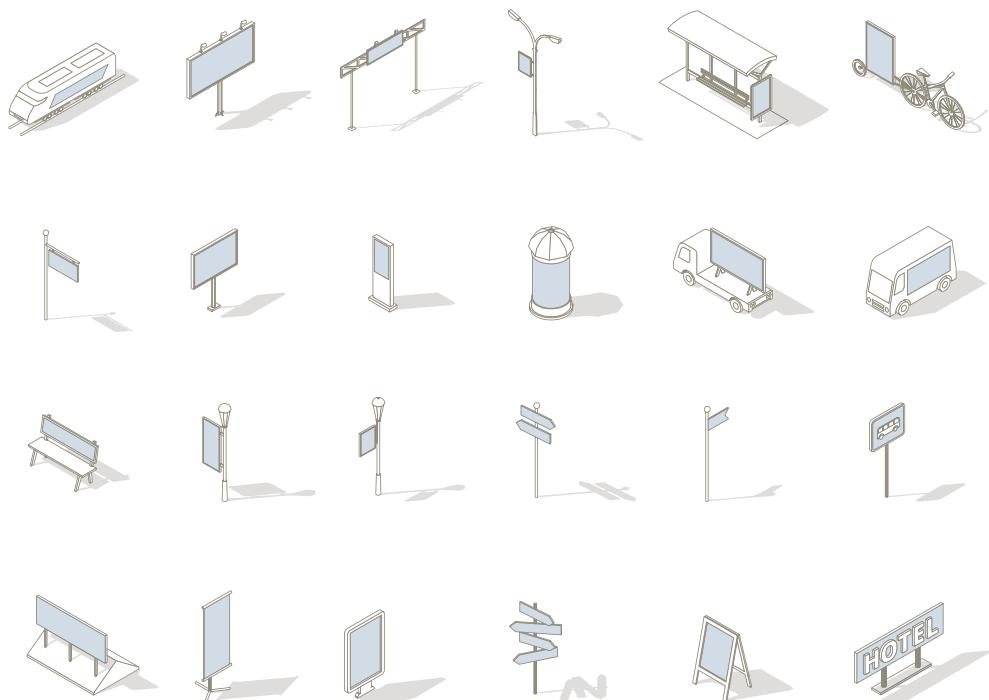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2023

KOREA OUT OF HOME ADVERTISING CENTER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이 해설집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법령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찾아 이해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령 및 관련 법령 등을 정리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각 장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내용과 법제처 법령해석 내용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판례·법령 해석 및 질의·회신 내용은 원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조문이 개정된 경우에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현행 법령 조문으로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해설집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다른 행정기관 소관사항과 중복되는 사례의 경우 타 행정기관의 유권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령 질의·회신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차례

제 1 장 개요

1. 옥외광고의 개념	10
2.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근거	15
3.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	16

제 2 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영 제1조)	18
2. 정의(법 제2조)	18
3. 적용상의 주의(법 제2조의2)	21
4. 옥외광고물의 분류(17종)(법 제2조·영 제3조)	21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법 제5조의2)	23

제 3 장 허가 및 신고개요

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제5조)	26
2.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 (영 제4조·제5조, 시·도 조례표준안 제2조·제8조)	28
3.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법 제3조·영 제4조·제5조·제7조)	28
4.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법 제3조·영 제6조)	29



5. 허가·신고 절차(법 제3조·영 제7조)	30
6.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법 제3조·영 제8조)	33
7.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법 제3조·영 제9조)	35
8.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법 제3조·영 제10조)	37
9.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등 수수료(법 제17조)	38
10. 광고물 실명제(법 제16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	38

제 4 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법 제3조제3항·영 제12조)	44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47
3.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행령)	50
4.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67

제 5 장 표시방법 완화

1. 표시방법 완화(법 제3조제4항·영 제21조)	86
2.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영 제22조)	88
3.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법 제3조제7항·영 제23조)	89

차례

제 6 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법 제4조)	94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영 제24조) ..	94
3.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97
4. 표시방법의 강화(법 제4조제2항·영 제25조)	98

제 7 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 등(영 제26조)	104
2.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등(법 제4조의3)	105
3. 주민협의회의 운영(영 제27조)	106
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법 제4조의4)	107
5.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	110

제 8 장 공공목적 및 기금 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법 제6조)	112
2. 적용배제(법 제8조)	115
3. 한국옥외광고센터(법 제11조의4)	116
4.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118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법 제6조의2)	121



제 9 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법 제7조)	126
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의2)	129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영 제35조)	130

제 10 장 안전점검

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134
2.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법 제9조제1항·영 제37조) ..	135
3.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법 제9조제2항~제4항·영 제38조)	137
4.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법 제9조의2·영 제38조의2) ..	137

제 11 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140
2.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 (법 제10조제7항·영 제39조의2)	143
3.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144
4.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145
5. 허가 취소 등(법 제13조)	149
6.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법 제14조)	150

차례

7. 청문(법 제15조)	153
8. 벌칙(법 제17조의3 · 제18조)	153
9. 양벌규정(법 제19조)	154
10. 과태료(법 제20조)	154

제 12 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영 제44조)	166
2.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제10조의4·영 제43조의2)	169
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11조의3)	170
4.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법 제12조)	171

제 13 장 기타

1. 수수료 징수(법 제17조)	176
2. 주요 부칙	176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CHAPTER 01

개요

1. 옥외광고의 개념
2.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근거
3.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



제1장 개요

1

옥외광고의 개념

“옥외광고”라 함은 옥외(건물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는 용어를 말하며, 최근에는 OOH (Out Of Home)광고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집 밖에서 접하는 광고를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범주는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와 산업계에서 말하는 옥외광고 그리고 학계에서 말하는 옥외광고의 개념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법률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의 개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시간적·공간적·형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간적 특성으로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이라는 용어를 통해 일시적인 게시물과 구분하고 있으며, 공간적 특징으로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라는 용어를 통해 법률에서 규제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행태적 특성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예시를 통해 추상성을 낮춰 구체화된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서는 옥외광고에 물체를 뜻하는 “물”을 붙여 표현하는 것을 보더라도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외형적으로 보이는 물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대부분의 규제사항들이 광고물의 제작·설치·외형 등과 관련이 있으며, 광고내용이나 문구에 대한 규제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보다는 광고내용과 관련한 타법에서의 규제사항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분류를 총 16종(특정광고물 제외)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16종 광고물 분류 중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8종에 한해 디지털광고물로 표시가 가능하고 나머지 8종은 불가능하다.



광고물 분류별 예시 및 디지털광고물 적용 가능 여부

광고물 분류	예시	디지털 광고물 적용 가능 여부
벽면 이용 간판		가능
돌출간판		불가능
공연간판		가능
옥상간판		가능

• • 제 1 장

개요

광고물 분류	예시	디지털 광고물
자주 이용 간판		가능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능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가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일부 가능



광고물 분류	예시	디지털 광고물
선전탑		불가능
아치광고물		불가능
애드벌룬		불가능
창문 이용 광고물		가능

• • 제1장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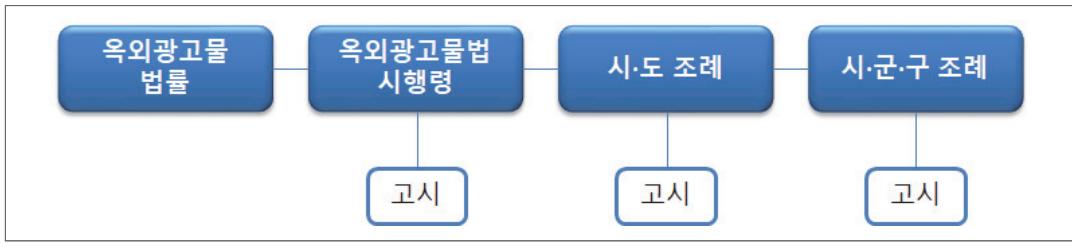
광고물 분류	예시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불가능
현수막		불가능
벽보		불가능
전단		불가능



2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개념과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자치사무(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는데,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제4호마목(주거생활환경의 장려 및 지원), 제14조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서 시·군·자치구 사무(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광고물 정비·단속, 광고물 제작 업자 지도·단속)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무에 있어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제한적이며, 셋째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위법한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고유사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부터 말하는 “옥외광고 행정업무”라 함은 옥외광고물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및 옥외광고사업자에 관한 자치단체의 모든 관리 업무를 말한다. 자치단체의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근거는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 시·도 조례 및 시·군·구 조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옥외광고물의 법률적 관리 체계

단계별로 살펴보면, 법률에서는 옥외광고물법의 제정 목적과 광고물의 정의, 허가·신고, 금지 또는 제한, 안전점검, 광고물 정비, 처벌 등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의무 사항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시·도 조례와 시·군·구 조례에서는 추가적인 내용과 절차를 다루고 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옥외광고 행정업무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며, 그 내용도 다양하다. 다음은 옥외광고 행정업무를 크게 5가지로 나눠 제시한다.

①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표시·설치 방법이나 그 기준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등은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②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진다.

③ 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에 고정광고물에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유동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에는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옥외광고사업자의 등록과 교육

법 제11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12조에서 시장등은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영

법 제6조의2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2

CHAPTER

총칙

1. 목적(법 제1조·영 제1조)
2. 정의(법 제2조)
3. 적용상의 주의(법 제2조의2)
4. 옥외광고물의 분류(17종)(법 제2조·영 제3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법 제5조의2)



제2장 총칙

1 목적(법 제1조·영 제1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정의(법 제2조)

가.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영 제2조)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교통 시설, 교통수단 포함)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교통시설: 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
 - 교통수단: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덤프트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



적용상 주의

-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뜻이므로 특정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운동장 내부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정의에서 제외
 - 예) - 밖에서 보이지 않고 통제하는 운동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내부 제외
 - 아파트 단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경비실 등에서 통제하는 아파트 단지 내 제외
 - 건물 등의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 등의 시설내부 제외 등
- ※ 다만, 운동경기장·골프장·스키장 내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등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라도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옥외광고물에 해당됨

나. 게시시설(법 제2조제2호)

-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 〈예〉 - 옥상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구조물(공작물)
 -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지주 또는 철제 구조물(공작물)
 - 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식 구조물(공작물)
 - 아치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시설물 등

다. 옥외광고사업(법 제2조제3호)

- 옥외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 ※ 옥외광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

라. 기타 법령 등에 나오는 용어

- 간판 또는 광고물: 옥외광고물을 뜻함
- 광고물등: 광고물과 게시시설을 포함한 총칭
- 표시: 표시 또는 설치를 총칭
- 관리자등(광고물):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공구조물: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 등으로 만든 구조물
- 옥상구조물: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옥탑·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 네온류: 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 전광류: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장치를 이용한 것
- 디지털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

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광고물

- 발광다이오드: LED(갈륨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려 빛을 발산하는 반도체 소자)
- 액정표시장치: LCD(액정에 가한 전압에 의해 분자의 배열이 변하여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하는 표시장치)
- 디지털로그램: 디지털로써 3차원 영상으로 된 입체 사진(입체상을 재현하는 간섭 줄무늬를 기록한 매체)
- 전자빔: 전자총에서 나오는 속도가 거의 균일한 전자의 연속적 흐름으로 방사되는 것
- 동일모형: 동일한 형태나 모양 등으로 만든 물건 등
- 판류형: 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벽면 등에 부착하는 것
- 입체형: 문자·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건물 등의 벽면 등에 직접 부착하는 것
- 편익시설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설로 국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시설물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생활형 광고) – 자기 업소의 자영업 등 광고
- 타사광고: 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상업용 광고) – 자기 건물 또는 업소와 관련이 없는 광고
- 특정시기: 국제행사, 연말연시 또는 체육·문화·종교행사 등의 행사기간을 전후한 시점(기간)
- 공공목적 광고물: 국가등(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 순수한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 공공단체(영 제29조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

- 도로의 굽은 지점(곡각지점):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 상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
- 도시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보호지구·미관지구·경관지구·보존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구역·지구



- 자기 건물: 자기가 그 건물 연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 고정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판이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 등으로 제작하여 건물·벽면·지면 등에 고정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 유동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지정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3 적용상의 주의(법 제2조의2)

-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4 옥외광고물의 분류(17종)(법 제2조·영 제3조)

종류	정 의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공연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종류	정 의
	<p>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입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 수 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시설(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덤프트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특정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3조 각 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디지털광고물의 적용 및 표시대상: 9종 (영 제3조의2)

-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 광고물

※ 고정상태에 따른 옥외광고물 분류

고정광고물 (13종)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유동광고물 (4종)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법 제5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 및 관련 정책 수립·추진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광고물 및 관련 산업발전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정비체제 구축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의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 조성
 - 주민참여와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제도 및 기반 조성
 - 옥외광고사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
 - 필요한 예산 확보, 법령 및 제도개선
 - 우수광고물, 모범 옥외광고사업자 및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옥외광고 산업 발전 도모
-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및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조언·권고 및 기준 제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 수립·추진, 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 우대 등 필요 한 조치 마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 진흥, 세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토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 시·도지사)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개발·보급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상점입구에 설치한 인형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Q.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상점 입구에 위치한 풍선 인형을 옥외 광고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특정한 장소나 물건 등에 문자·도형·그림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점 입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지 않은 풍선인형이 특정 점포를 상징하는 등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상의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현장의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여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특정 업체의 정보가 표시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Q. 횡단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특정 사업체의 정보가 표시된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용 건으로 보아 하는지. 옥외광고물로 분류가 된다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은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허가가 가능한지.

A. 질의하신 시설물의 경우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특정 사업체의 명의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경우 법 제3조·제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에는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설물이 교통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광고물을 교통안전표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시행령과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준수 여부 및 허가·신고여부,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제1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CHAPTER 03

허가 및 신고개요

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제5조)
2.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
(영 제4조·제5조, 시·도 조례표준안 제2조·제8조)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법 제3조·영 제4조·제5조·제7조)
4.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법 제3조·영 제6조)
5. 허가·신고 절차(법 제3조·영 제7조)
6.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법 제3조·영 제8조)
7.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법 제3조·영 제9조)
8.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법 제3조·영 제10조)
9.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등 수수료(법 제17조)
10. 광고물 실명제(법 제16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



제3장 허가 및 신고

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제5조)

가. 허가 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4조)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옥상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17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그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됨)을 제외한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등, 대여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의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 표시는 허가 대상



광고물 종류	허가 대상
	에서 제외(신고 대상임)
선전탑·아치 광고물	• 모든 선전탑과 아치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 광고내용의 변화가 없는 네온류 광고 물과 전광류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p>〈예외: 허가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열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거나 형광등을 이용하는 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전광류(빛이 점 멀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에 한함)
특정 광고물	• 영 제3조 각호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m²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나. 신고 대상 광고물(법 제3조·영 제5조)

광고물 종류	신고 대상
벽면 이용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대상 벽면 이용 간판이 아닌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5m² 이상인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 한 면의 면적이 1m² 미만인 간판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 간판의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 모든 입간판
현수막	•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광고물 종류	신고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청에 표시방법을 위임(영 제19조제3항)
벽보·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벽보와 전단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허가 대상임)

2 허가·신고 배제 광고물(영 제4조·제5조, 시·도 조례표준안 제2조·제8조)

● 벽면 이용 간판 중

- ①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m^2$ 미만인 간판
 - ②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 위 ②와 ③의 경우, 1면의 면적 $3.5m^2$ 이하, 두께 30cm 이하인 2개 이내의 간판
 - ④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표시면적 $1.2m^2$ 이하의 간판)
 - ※ 위 ①내지 ④의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광고내용이나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것은 제외)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임
-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지 않고 표시한 광고물

3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법 제3조·영 제4조·제5조·제7조)

-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게시시설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영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
- 게시시설만을 별도로 허가신청이나 신고한 경우, 광고물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도로 표시허



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게시시설을 「건축법」에 의하여 별도 공작물 등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이 법령에 의한 게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로 갈음함
 - 이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 시 반드시 옥외광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에 대하여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설치 할 수 있음
 - (대상) 옥상바닥이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옥상간판 게시시설, 지주 이용 간판 게시시설, 현수막 게시시설 등임. 이 경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4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법 제3조·영 제6조)

가.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법 제3조제1항·영 제6조제3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시·도자연유산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임
-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 대상지역·장소로 볼 때 전 국토의 모든 지역·장소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허가·신고대상임(이 법의 정의에서 옥외광고물로 볼 수 없는 광고물을 표시한 지역·장소 제외)

나. 허가·신고 대상 물건(영 제6조제2항)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덤프트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

5 허가·신고 절차(법 제3조·영 제7조)

가. 신청인(신고인)(영 제7조)

- 신청(신고)인: 광고주(타사광고의 경우에는 옥외광고대행사업자)
※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명칭·대표자의 성명 기재

나. 허가 및 신고 수리기관

- 일반적인 광고물: 시장·군수·자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포함)(법 제3조·영 제7조)
※ 교통수단이 둘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광역단위 광고물: 시·도지사(법 제3조의2·영 제11조)
 - 광역단위 광고물: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 의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 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다. 허가처리 절차(영 제7조제1항)

1)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시 기재 및 확인사항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그 밖의 사항'란에 그 인가·허가여부를 기재
- 당해 관리부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등 조치(인·허가 등 없이 광고물 표시행위 사전방지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위반 사전예방 등)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리자: 당해 건물·토지 등의 사용·관리 등에 대한 권한(법률·정관 및 규약 등에 의하여)을 위임받은 자

적용상 주의

-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토지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전체 소유자란 등기상 권리를 가진 자)
-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주상복합상가)에 광고물 설치 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름)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건물 등의 옥상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을 포함한 구조안전확인서류(「건축법」에서 규정한 구조계산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예외: 제출서류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2) 처리기간: 10일(변경허가의 경우에도 같음)

3) 허가증 교부

-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한 때에 교부(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라. 신고수리 절차(영 제7조제2항)

1) 신고 시 제출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대하여는 허가절차와 같음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관리자 범위, 적용상 주의 등은 허가절차와 같음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2) 처리기간: 5일(변경신고의 경우에도 같음)

3) 신고증명서 교부

- 신고수리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가 광고물등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때에 교부 (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 광고물중 현수막·벽보·전단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검인, 압인, 천공)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음



※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음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허가·신고수리 절차(법 제3조제9항·제7조)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허가·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바.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간주제 적용(법 제3조제10항)

- 민원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 민원처리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봄

사.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법 제3조의2)

- 시·도지사가 처리하는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수리 절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허가·신고수리 절차, 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간주제 적용은 법 제3조 및 영 제7조의 허가·신고절차와 같음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6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법 제3조·영 제8조)

- 광고물등이 금지광고물과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에 저촉되는지 여부(법 제5조)
- 종류별 광고물등의 세부 표시·설치방법 및 업소별 광고물 설치수량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영 제3장~제5장)
-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저촉되는지 여부(영 제24조)
- 표시기간의 적정성 여부(별표 1의 기준)
- 다른 법령에서 광고표시 내용 등 제한사항 위반 여부(법 제5조제2항제6호) 등
 -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의료법」 등

- 필요시 관련 부서 등과 협의 처리

※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업무처리는 업무담당자 등이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여 적법한 경우에 한해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후,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등 교부(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2호 서식)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영 별표 1, 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
3. 돌출간판	• 3년 이내
4. 공연간판	• 2년 이내
5. 옥상간판	•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6의2. 입간판	• 3년 이내
7. 현수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기간 이내 • 현수막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7의2.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8.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9. 벽보	• 15일 이내
10. 전단	• 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선은 제외한다) 나.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 30일 이내
14. 선전탑	• 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17. 특정광고물	•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영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7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법 제3조·영 제9조)

가. 변경허가의 절차(영 제9조제1항·제2항)

구 분	내 용
제출처	• 허가를 받은 행정기관(행정청)
처리기간	• 10일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등의 규격 • 사용자재 • 광고내용 •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 허가증 <p>〈예외: 제출서류 축소 및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p>〈적용상 주의〉 위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옥상간판 등 대형광고물의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광고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허가절차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도서를 첨부하여 신청</p>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을 새로 발급

나. 변경신고의 절차(영 제9조제1항·제4항·제5항)

구 分	내 용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수리를 한 행정기관(행정청)
처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일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으로 시·도 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심의관련 서류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광고물만 해당) 신고증명서 <p>〈예외: 축소 및 생략〉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음</p>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다. 광고물 표시허가 관리자의 변경(영 제9조제3항)

- 신청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신고한 자)
- 변경내용: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의 본인 또는 광고물 관리자(법 제10조)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의 변경
- 제출처: 허가(신고)를 받은 행정기관(행정청)
- 제출기간: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8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법 제3조·영 제10조)

구 분	내 용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수리한 행정기관(행정청)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이내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표시기간 1년 미만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종전의 표시기간 1년 이상인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예외〉 자사광고(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인 경우 제외 <p>〈예외: 신고하여 표시(허가)기간 연장(영 제10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안전점검(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 방법: 대상 광고물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표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와 변경 허가(신고) 동시 신청(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면서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음
교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 연장된 표시기간의 시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 - 변경 대상 광고물: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시작

9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등 수수료(법 제17조)

- 광고물등에 대한 표시·설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 변경 및 표시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10

광고물 실명제(법 제16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

- 표시내용: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
※ 허가·신고번호, 위치, 규격, 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제3항)
- 표시대상 광고물: 5종(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제1항)
 -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예외: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의 광고물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그 밖의 사항'란에 그 인가·허가여부를 기재
- 당해 관련부서 등과 사전 협의하여 인·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등 조치(인·허가 등 없이 광고물 표시행위 사전방지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위반 사전예방 등)

-
- 표시위치 및 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27조제3항·제4항)
 - 표시위치: 해당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입체형 등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
 - 표시방법: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모바일·전자적 방식 등으로 인식이 가능한 방법
 - 그 밖의 실명제 관리·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공고



법제처 법령 해석

① 공동주택의 안내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 Q.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여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지
A.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하므로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710, 2017. 2.22)

②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 Q.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 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는지
A.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0-0340, 2020. 8. 3)

③ 「옥외광고물법」에서의 도로의 범위

- Q.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되는지
A.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됩니다.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법제처 20-0340, 2020. 8. 3)

법제처 법령 해석

④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Q.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허기를 2인이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를 대리하거나 대표하여 연장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가능한지

A. 법령에 수인이 공동명의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변경허가 신청은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인 공동명의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른 공동명의자는 표시기간의 만료에 따른 법률효과의 종료를 예상하였음에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따른 법률효과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공동명의자 모두의 표시허가 기간 연장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그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1-0613, 2021. 12. 7)

대법원 판례

① 허가기간 도래 위법광고물 행정대집행

Q. 당초 적법하게 허가 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광고물이 허가기간이 도래했고, 현행 법령상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A. 허가기간이 이미 도과하였고, 기간 만료 당시나 현행 법령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광고물의 철거를 부정하는 것은 위법 광고물을 무한정 방치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기관의 위법 광고물 단속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광고물 관리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 함은 물론 다른 위법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가기간 도래 위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 집행은 보충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량권 남용 및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 94누 7126, 1994.11.11)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로 갈음 여부

Q.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시 건물임대차계약서가 건물주의 승낙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신청 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실질적 요건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임대차계약서 계약조건에 임차인이 간판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건물주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집합건물의 광고를 표시 허가를 위해 승낙을 필요로 하는 구분 소유자의 수와 지분비율(각 4/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누14190 참고

② 개별 법령에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 반려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 Q. 개별 법령에서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과 타 개별 법령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이 타 개별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한 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신청에 대해 「건축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4

CHAPTER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법 제3조제3항·영 제12조)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3.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행령)
4.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4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법 제3조제3항·영 제12조)

1) 표시내용 관련(영 제12조제2항·제3항)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
-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 ※ 특별한 사유란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한글 또는 외국문자가 포함된 내용)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등
-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 가능

2) 게시시설 관련(영 제12조제4항)

- 광고물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가능
 - ※ 여러 가지 모형으로 변형된 광고물을 표시할 때도 규정된 면적과 길이·높이 등은 초과금지

3) 공중에 위해방지 등 안전 관련(영 제12조제5항 내지 제7항)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는 사용금지
 - ※ 야간에 보행자·차량의 안전 등을 위해 빛을 발하는 도료의 사용은 금지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은 설치금지(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 입간판(영 제3조제6호의2)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능



4)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량 관련(영 제12조제8항)

- 다음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 한 업소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도로에 접한 업소는 4개 이내
 - ※ 입간판(영 제3조제6호의2) 1개는 수량에서 제외
 -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인 벽면이용간판(소상공인이 자사광고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 1개는 수량에서 제외

간판의 총수량(시·도 조례표준안 제2조)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 총수량

1.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3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2개 이하
3. 다음의 경우는 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간판 하나 추가설치 가능(상호 중복적용 불가)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제1호·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 그 밖에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다음의 간판은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

1. 타사광고(영 제4조제1항)
2. 1면의 면적이 0.36m^2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공연간판(시·도 조례표준안 제10조)
4. 하나의 업소를 표시하는 면적이 0.36m^2 이하인 연립 간판
5.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6. 물가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7.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영 제3조제1호라목)
8.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번호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 건물당 각 1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적용상 주의〉

- 영 제12조제8항에서 규정한 간판의 총수량 3개(또는 4개)를 넘지 않도록 주의

5) 일반적인 표시방법(영 제12조)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시·도 조례)

추가적인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3조)

① 일반적인 표시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 금지
2. 광고물등의 바탕색에 적색류·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1/2 이내
※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m^2$ 이하이거나,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입체형 포함)은 제외
⇒ 광고물등의 바탕색: 광고판과 광고내용(글자·도형 등) 등을 합한 전체면적의 색깔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 설치 및 관리

② 광고물등의 면적산정 방법

1. 광고물등이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되어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하고, 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등으로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기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2. 면적의 산정은 개별 광고물등 단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적용상 주의〉

* 광고물등의 길이·높이 등의 산정은 최대 길이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

광고물등에 피뢰설비 설치 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제2항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료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피뢰설비 설치 관련규정

-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서지(surge: 전류·전압 등의 과도 파형을 말한다)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14조)

가. 일반적인 표시방법(영 제14조제1항)

-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사용
-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함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계와 시공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시공 가능

나.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는 표시방법(영 제14조제2항)

-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표시

다. 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영 제14조제3항)

구 분	내 용
사용 제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m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p>〈예외: 사용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 일반주거지역중 너비 15m 이상인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별 표시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으로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자주 이용 간판의 표시는 적법한 경우만 가능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용금지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p>〈제한할 수 있는 추가 지역(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시 영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의 규정 준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운전자가 전방을 볼 수 있는 곳(장소)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금지 <p>〈예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 적용 배제 <p>〈빛의 밝기 및 색깔 기준(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함 - 주민의 주거 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빛의 밝기가 제한규정(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라.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4조제4항)

1) 사용 제한지역과 표시방법은 네온류의 표시방법 준용

2)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기준 등

구 분	내 용
표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이 30㎡ 이상으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표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당 표출비율의 20/100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함 <p>〈시간당 표출비율(시·도 조례표준안 제4조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100 이상을 표출 - 시·도, 시·군·구가 의뢰하는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도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가 의뢰하는 광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비용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마. 광고물등에 전기 공급 또는 사용 제한(영 제14조제5항)

-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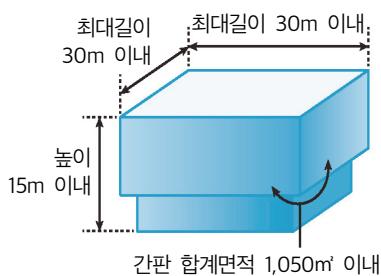
3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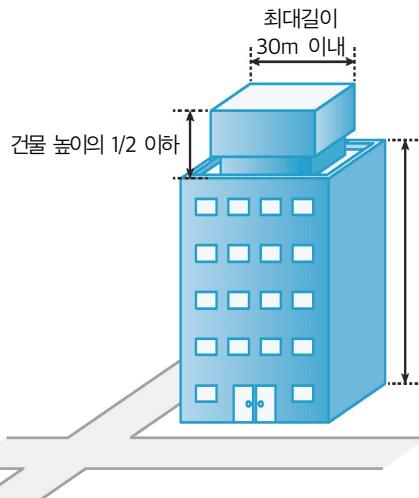
가.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영 제15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사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규격>



<표시장소·위치>



1) 일반 옥상간판 표시방법

구 분	내 용
표시가능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 봄) 및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으로 봄)에 있는 건물 ※ 제외 :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②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③ 위 ②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④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구 분	내 용
	<p>〈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는 표시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온류·전광류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점멸·동영상 변화금지) ※ 자기 건물: 자기가 그 건물을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건물에 입주하여 사무를 보거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함) •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도록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①에서 제외된 건물에는 표시 불가
표시가능 건물 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광역시(군 지역 제외)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p>〈표시가능한 건물 총수(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1항)〉</p> <p>광역시(군 지역 제외)에서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읍·면 지역은 제외)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 군(시의 읍·면 지역을 포함)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층수는 건축허가(신고)대장상에 기록된 층수를 말함 <p>〈예외: 하나의 층수를 4m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규정(표시가능 건물 층수)된 층수에 하나의 층을 4m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층족하는 건물에도 표시가능
층수 제한 없이 표시 가능 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별 최하 허용 층수(특별시 5층)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 이하일 것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경우에 해당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광고 내용 표시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외를 제외한 공장 및 부속건물로서 옥상간판 허용 층수, 수평거리 등 요건을 갖춘 경우는 타사광고 허용
표시 규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의 길이 및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의 최대 길이: 30m 이내 - 간판 각 면의 면적 합계: 1,050㎡ 이내 • 간판의 높이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m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1/2 초과 금지 • 간판높이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p>〈예외: 옥상바닥이 아닌 장소로부터 간판 높이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은 옥상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로써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합계)이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고,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오지(돌출) 않은 경우에는 간판의 높이는 옥상구조물의 위쪽 바닥으로부터 산정 -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영 제15조제4호나 목)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cm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 <p>※ 옥상바닥은 건물 최상층의 옥상 바닥(지붕)면을 말함. 다만, 옥상에 부속건물이 있고 당해 부속건물이 건축허가(신고)대장상 층수에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부속건물 최상층의 바닥(지붕)면이 옥상바닥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구조물 위에 옥상간판을 표시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포함하고 건물 높이에는 포함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바로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돌출) 있는 경우 <p>※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참조</p> <p>〈옥상구조물에 표시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구조물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1/8 이상이고, 옥상구조물 바로위 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되지 않은 경우 •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 •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 높이에는 불산입 • 옥상구조물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 옥상구조물의 면적이 건축 면적의 1/8 초과하고 광고물이 옥상구조물 바로위 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 <p>• (옥상구조물의 높이) 광고물 높이에 산입, 건축물 높이에 불산입</p>
표시 규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위 ③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준용 ※ 건물의 높이·층수 등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제9호 참조 <p>〈항공장애 표시등 설치(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4항)〉</p> <p>옥상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부분)으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6조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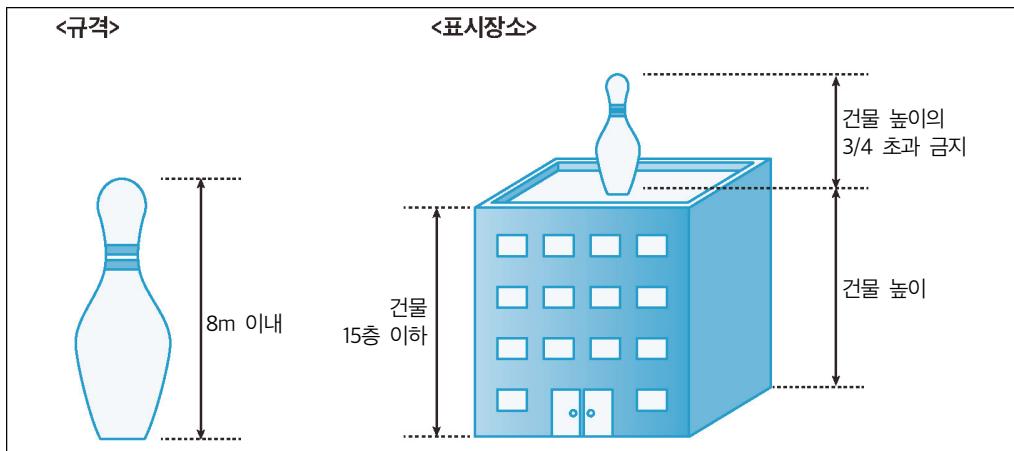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m부터 50m까지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유지 <p>〈옥상간판 간 수평거리(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2항·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m 이상 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기를 한 경우(기간연장·변경 포함)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p>※ 광고물등이 관할구역 밖이라도 옥상간판 간 이격거리 준수를 위해 통보</p>
표시방법	<p>〈예외: 옥상간판 간 수평거리의 제한내용 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 시·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옥상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표시금지 •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 <p>〈예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설계 없이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가 180cm 이하인 간판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시·도 조례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블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

2) 시·도 조례에 위임된 옥상간판 표시방법

위임된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가림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5항)	
구 分	내 용
허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 금지 • 가리는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림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표시 • 그 밖의 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p>※ 표시할 수 있는 지역·장소, 규격·총수제한, 거리제한 등 적용 배제</p>

위임된 볼링핀 모형의 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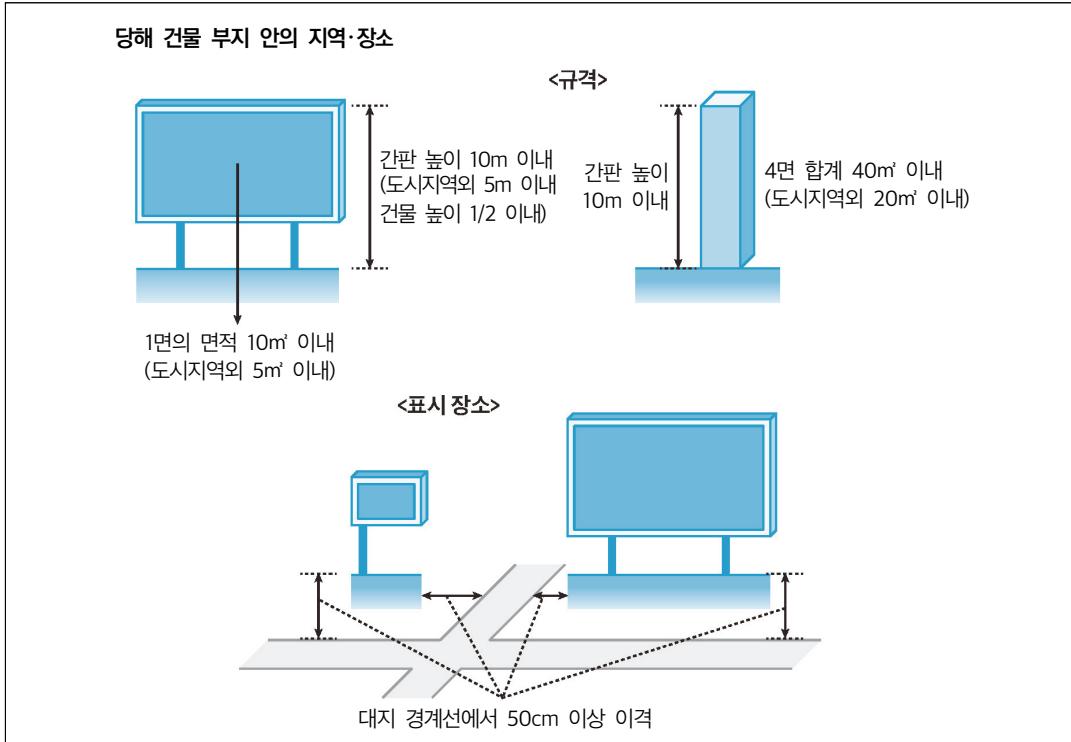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허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높이 8m 이내로 하되, 그 건물높이의 3/4을 초과금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만 표시(자사광고) •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 •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 •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 사용 금지 ※ 옥상간판의 규격 중 높이·층수의 산정방법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하고, 목조건물·가설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음

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영 제16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의 윗 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사항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의 윗 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내 	

1)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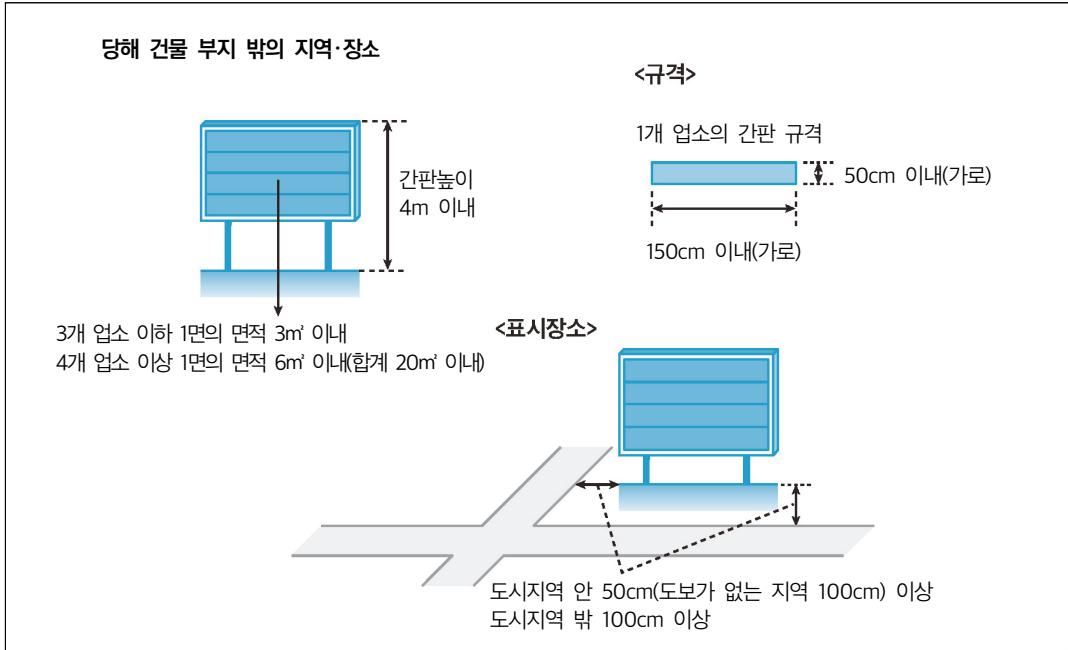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표시기준 및 방법	<p>※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 소유토지라도 당해 건물의 부지 안이 아니면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p> <p>①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가능</p> <p>②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p> <p>③ 위 ①·②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건물 부지 안)의 표시방법은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p>〈예외: 가림간판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p> <p>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가림간판 표시</p> <p>※ 가림간판을 표시코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과 사전협의</p>

위임된 건물 부지 안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1항)

구 분	내 용
표시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장소에는 표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 지역 여건상 지주 이용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지역 내의 지역의 당해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10m^2 이내 -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40m^2 이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 초과금지 -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은 5m^2 초과금지 -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m^2 초과금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 <p style="padding-left: 2em;">〈예외: 하나의 간판 추가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간판 추가표시 가능 ※ 여건상 추가는 업소의 수가 많아 하나의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효과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한함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의 거리(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간판의 돌출부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내의 미관지구안 등에서 일정거리를 유지토록 한 사항 준수(별도 규정)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m^2 이하, 높이 1.5m 이하로 표시 가능 <p style="padding-left: 2em;">〈예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설치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00\text{m}^2$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전광류, 디지털광고물)

2)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가능 ② 전기 사용금지 ③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 사용금지 ④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안내하는 것만 표시 가능 ⑤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⑥ 위 ①~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건물 부지 밖)의 표시방법은 시·도 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을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p>〈예외: 가림간판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p> <p>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 가림간판 표시</p> <p>※ 가림간판을 표시코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과 사전협의</p>

위임된 건물 부지 밖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하나의 간판에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이하의 업소: 1면의 면적 3㎡ 이내, - 4개 이상의 업소: 1면의 면적 6㎡ 이내, 합계면적은 20㎡ 이내 • 간판의 크기(1개 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크기는 150cm 이내 - 세로크기는 50cm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 하나의 연립형 간판에 통합 표시) <div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 margin-top: 5px;"> <p>〈예외: 하나의 간판 추가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장소에 하나의 간판 추가표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소의 수가 많아 하나의 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광고효과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설치장소의 여건상 불가피하여 2개로 표시하여야 할 때로 제한 </div> • 보도·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간판의 이격거리(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유지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 보도(보도가 없는 지역은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유지
세부 표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이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부지 밖의 표시규격·방법의 규정된 범위 안에서 도로교통의 안전, 주변과의 조화 및 표시하려는 업소의 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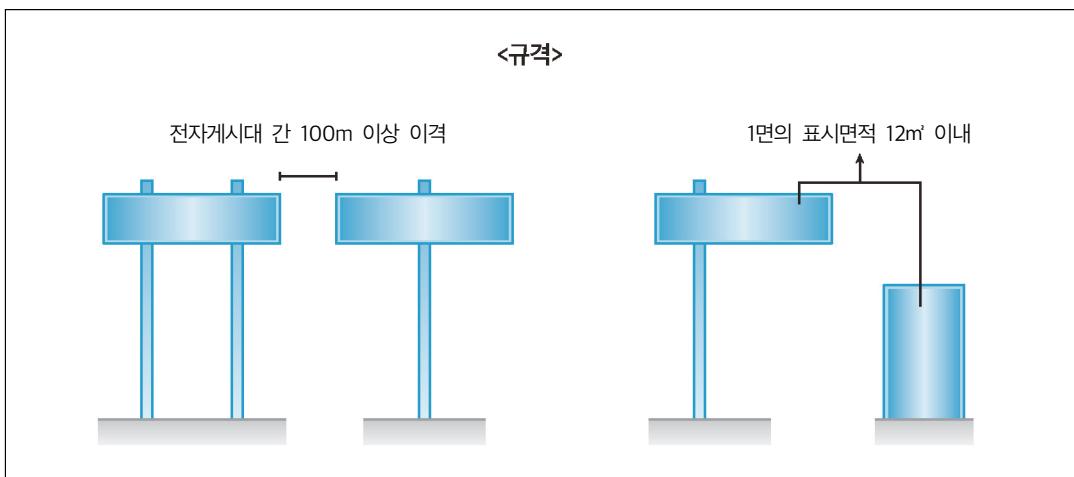
위임된 건물 부지 밖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부지 안과 밖에 표시하는 간판의 표시방법(영이나 시·도 조례표준안에서 규정한 표시 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음 •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 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사전 협의

3)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4항)

구 분	내 용
표시기준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 전기 사용금지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과 공공목적 내용만 표시가능 그 밖에 시·도 육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 준수 ※ 건물의 부지 안 및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도 불구하고 표시 가능

4) 전자계시대(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 표시방법(영 제16조제5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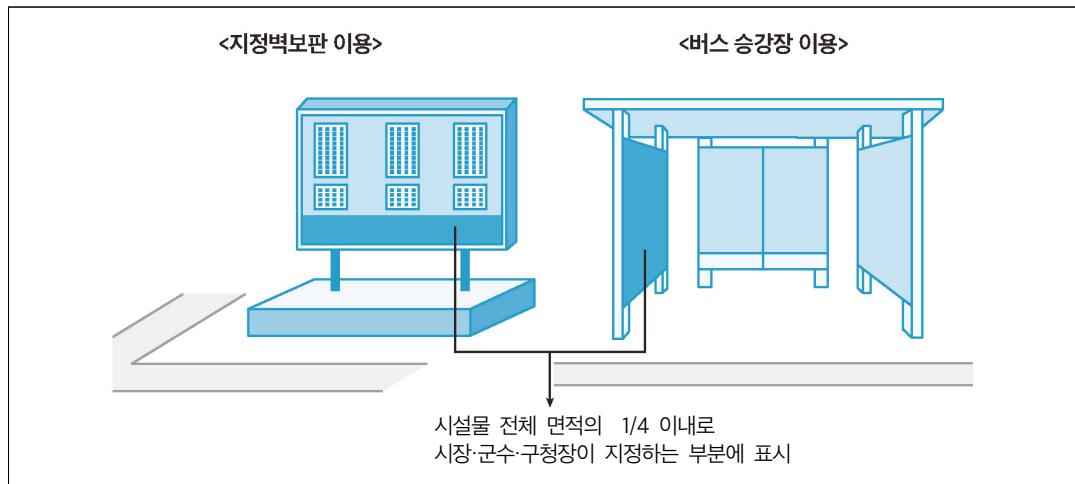


구 分	내 용
설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계 시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설치가능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면적(광고내용) 12㎡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m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유지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계시대의 경우,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 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 ※ 이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표시금지(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의 기준을 시·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가능 영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적용(준수)

위임된 전자계시대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제4항)

구 분	내 용
설치기능 추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게시대 간 이격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계시대 간 수평거리 100m 이상 유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 표시금지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으로 표시
세부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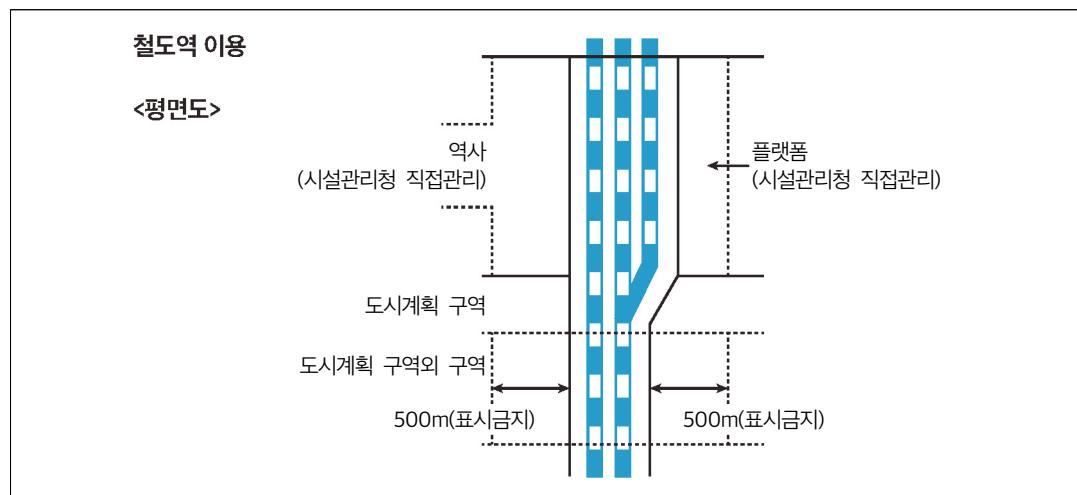
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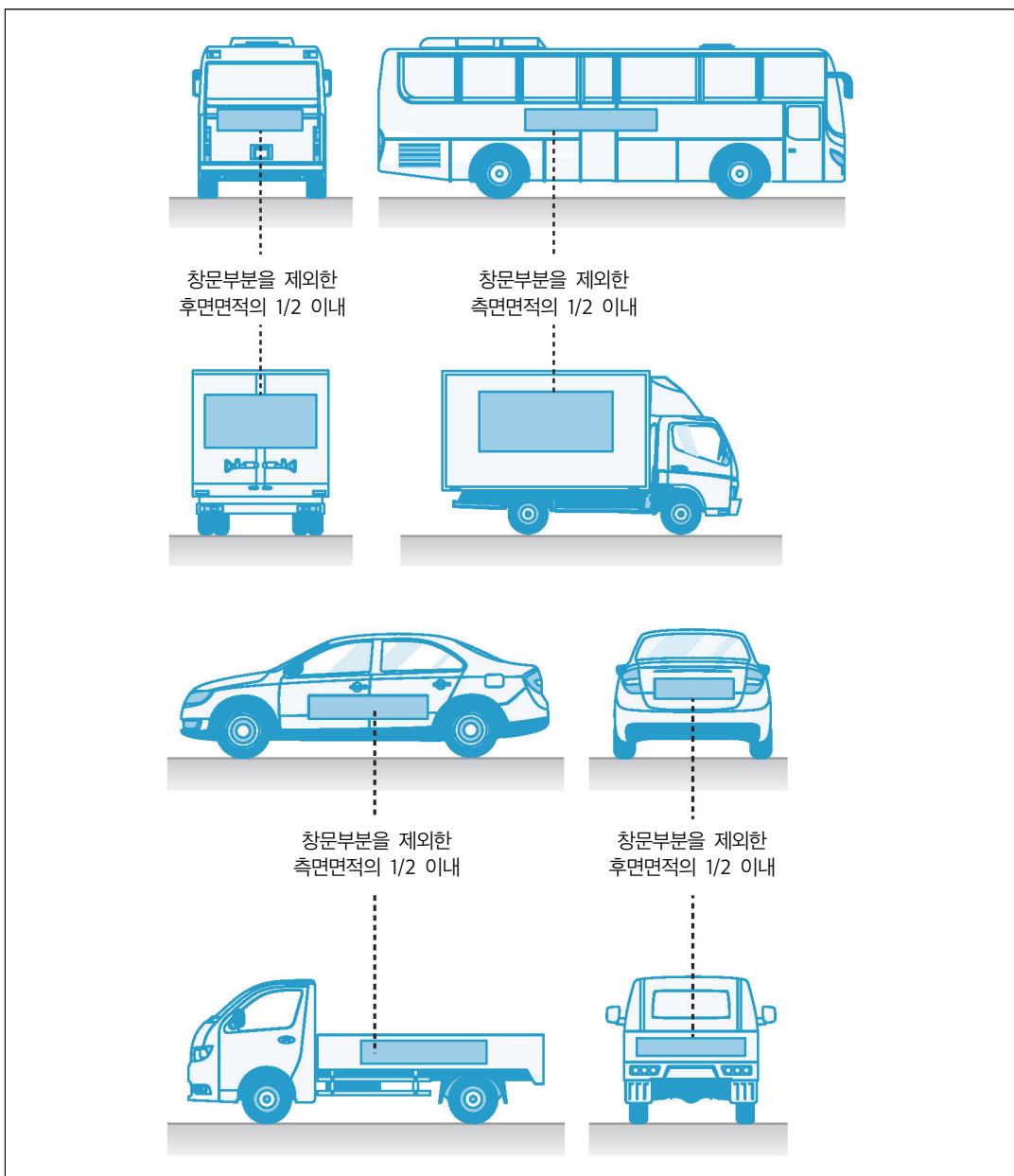
구 분	내 용
정 의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의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 허가
표시기간	• 3년 이내
표시대상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 • 그 밖의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의시설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p>※ 국가등의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 전광판, 육교 현판은 광고물을 표시(타사광고)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로 지정 금지</p> <p>〈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시·도 조례표준안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통 - 벤치 - 공공자전거보관대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p>※ 이 경우 제8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p>
표시방법 및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 <p>〈적용상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 면적 계산은 전면·후면·측면 등을 합한 전체면적의 1/4 이내 - 광고내용 표시위치는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하단 등)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표시(광고물은 전체면적 1/4 범위 내에서 전면·후면·측면에 각각 균등하게 표시) •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됨 <p>※ 공공시설물의 기능·용도·설치 목적 등이 광고물보다 우선되어야 함</p>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 •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준수

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8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시설(지하도·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국도)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중 시설관리청에서 따로 정하여 표시 토록 위임된 광고물은 제외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광고물 표시(시설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에 관하여는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관리청은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특히, 광고물을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라도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게시시설 포함)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 준수 ② 위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여 표시

마.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수단(「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덤프트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p>※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음식판매자동차의 측면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것은 제외(신고대상임)(영 제4조 제1항제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기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 자전거 대여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
	신고
	• 허가 대상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관리청 위임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지하철의 전동차 등)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지하구간 운행)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철도차량(열차)·도시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선박 및 덤프트럭의 외부 30일 이내: 비행선 외부
일반적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금지 ※ 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차체 등에 밀착하여 부착
표시면적 위임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1/2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함

1)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영 제19조제1항)

구 分	내 용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 표시(앞면 표시금지)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에 표시 ※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는 타사광고 표시가능



2) 항공기 등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 튀어나오게(돌출)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금지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 하는 지방 항공청장과 협의 <p>※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는 타사광고 표시가능</p>

3) 선박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4항)

구 分	내 용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형식으로 표시금지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차수 등 해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p>※ 선박의 운행 등 현실을 감안하여 자가용, 사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적합한 때에는 타사광고 표시가능</p>

4)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5항)

구 分	내 용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함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 가능 <p>※ 자사광고만 표시 가능</p>

5) 대여자전거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제7항)

구 分	내 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금지

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영 제19조의2)

구 분	내 용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기간(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함
시범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부산·대구·인천·경북 포함(각 200대)
표시방법	<p>①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한 광고를 202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 가능</p> <p>②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p> <p>③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p> <p>※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시행 2021. 6.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격 및 소재: 길이 123cm, 높이 46cm, 두께 36cm 이내, 소재는 LCD 또는 LED 사용 표시방법: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밝기: 일몰 전 2,000cd/m², 일몰 후 200cd/m² 이하

사. 특정광고물의 표시방법(영 제19조의3)

구 分	내 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표시기간은 3년 이내

아.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영 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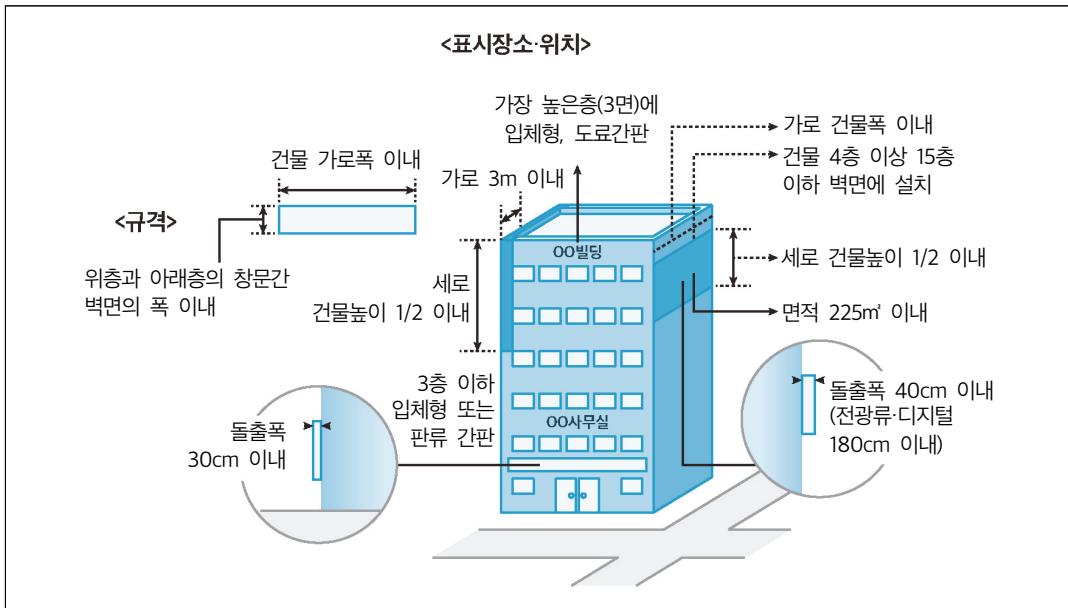
구 分	내 용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간판(영 제3조제6호의2)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밖과 인도·도로 등에 설치금지 시행령(영 제3장)에서 규정되지 않은 벽면 이용 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입간판·현수막·애드 벌룬·벽보·전단·선전탑·아치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함

4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

※ 영 제20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가.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 제8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간판(타사광고)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이 5m²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자사광고)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 대상임

구 분	내 용
신고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층 미만에 설치하는 표시면적이 $5m^2$ 미만인 간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표시와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거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하가 대상임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p>〈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옆면 및 현수식 간판과 세로로 길게 표시(가로는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하는 간판,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면적은 $225m^2$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하는 간판 ※ 창문, 환기구 등에 설치 불가
표시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 가능 <p>〈예외: 간판의 추가표시가 가능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표시면적 $1.2m^2$ 이하의 간판 건물 최상단에 입체형·도로로 표시하는 간판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간판(타사광고 등)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하는 간판과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간판(1면의 면적 $3.5m^2$ 이하, 두께 30cm 이하) 면적 $5,000m^2$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4m^2$ 이하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 물인 간판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물가안정 등 국가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의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
표시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cm 이내 <p>〈예외: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 완화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 폭은 40cm 이내(간판의 돌출 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cm 이내)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cm 이내로 표시 가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5층 이하에는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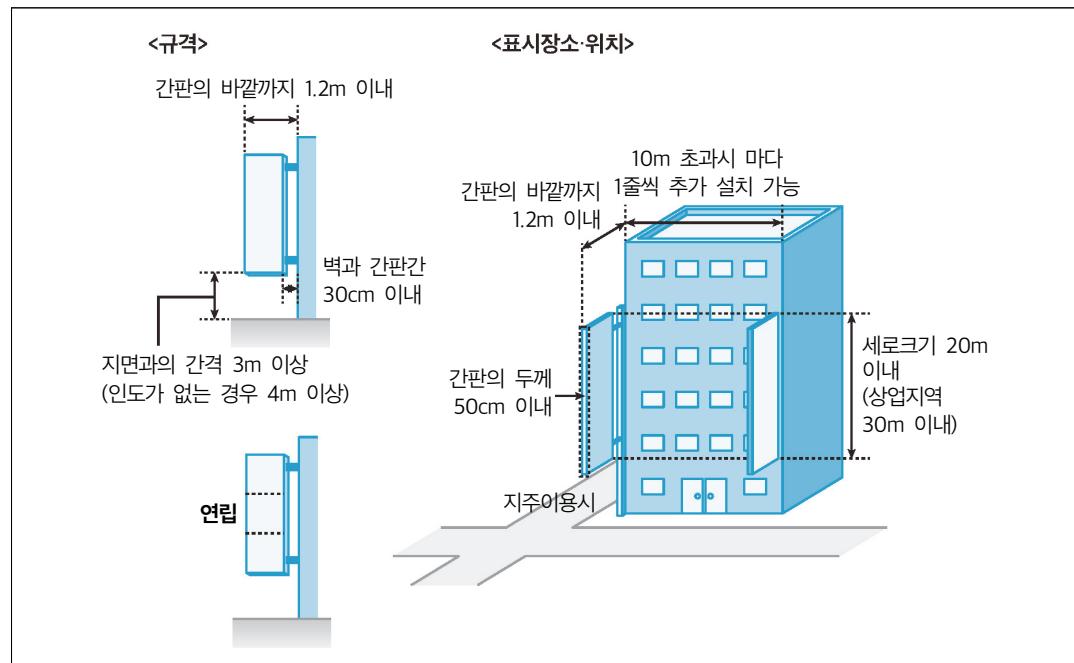


구 分	내 용
	<p>③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경우,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명칭은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당해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둘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함 5.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의 3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각각 하나의 간판 ※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은 가로는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 표시 2. 위 ②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 이내,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1/2 이내(가로는 건물의 가로폭 이내) •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봄)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음
⑤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1면의 면적이 3.5㎡ 이하이고 두께가 30cm 이하인 간판을 표시할 수 있음	
⑥ 벽면 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의 벽면(위 ④의 2)에 표시하는 간판(타사광고) 2.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 1개 ※ 이 경우 4㎡ 이하로 한정하며,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 금지)
⑦ 수소연료공급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의 간판 규격은 1면의 면적 3.5㎡ 이하이고 두께가 30cm 이하로 표시	
⑧ 위 ⑦의 수소연료공급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 표시 가능	

※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8조의2)

구 분	내 용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은 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음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영상표시장치등)의 설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가능 ②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 확보 ③ 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

나. 돌출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9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대상이 아닌 돌출간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상단)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m^2$ 미만인 간판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로크기는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간판의 두께는 50cm 이내 <p>〈예외: 이·미용업소의 표지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를 초과하여 돌출 금지 - 세로크기는 150cm 이내 - 두께는 지름 30cm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의 가로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m를 초과할 때마다 1줄씩을 추가하여 표시 가능 ※ 10m 이하 1줄, 10m초과~20m 이하 2줄, 20m 초과~30m 이하 3줄 등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별도로 세워 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cm 이내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의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지면과의 간격)에서 표시 가능 - 도로에 접하지 않은 당해 건물 부지 내에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도 인도가 없으면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 	
<p>간격 10m 초과</p> <p>간격 각각 10m 초과</p> <p>※ 좌·우측 간판 간 수평거리의 간격은 10m가 초과되도록 유지</p>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을 표시 할 수 있음(돌출간판을 표시하기 위한 벽면고정 지주이기 때문에 지주 이용 간판이 아님)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에 돌출간판 표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m^2$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표시가능 ※ 돌출간판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표시 금지

다.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0조)

구 分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table border="1"> <tr> <td>허가</td><td>•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td></tr> <tr> <td>신고</td><td>•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td></tr> </table>	허가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신고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허가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신고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크기는 건물의 벽면 가로폭 $1/3$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높이 $1/4$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중이거나 다음 공연의 내용만 표시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하나의 간판만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같은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가능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 30cm 이내 <p>〈예외: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장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cm 이내로 표시가능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cm 이내로 표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출입불가 장소) 				



라. 입간판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1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 0.6m^2 이하 합계면적 1.2m^2 이하 바닥면은 가로 50cm 이하, 세로 70cm 이하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보이는 면수를 적용하여 산정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 자사광고: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 금지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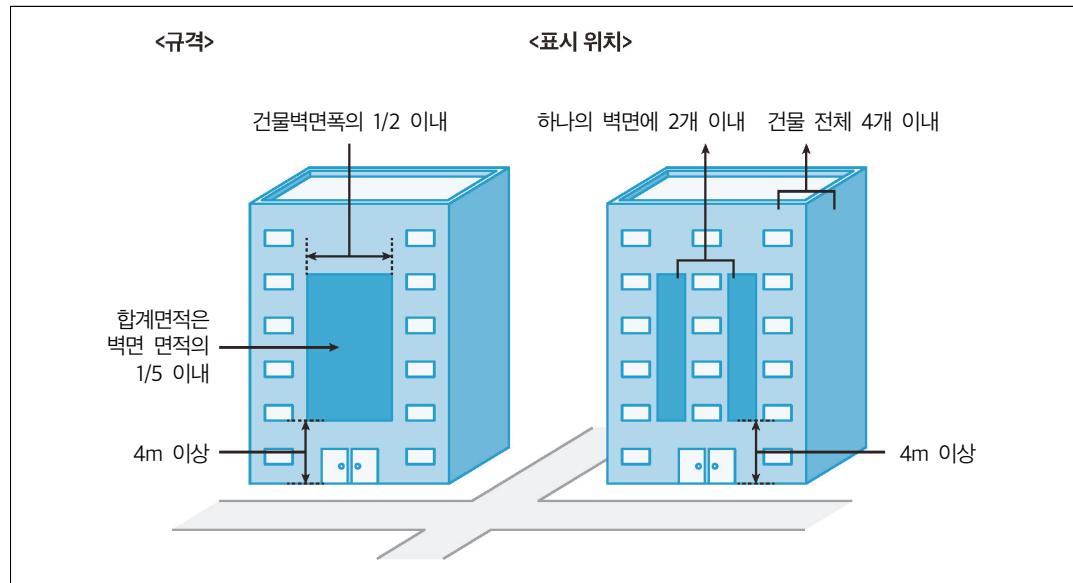
마. 현수막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 신고 사항	<table border="1"> <tr> <td>허가</td><td>면적이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td></tr> <tr> <td>신고</td><td>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사항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td></tr> </table>	허가	면적이 30m^2 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사항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허가	면적이 30m^2 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사항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 1년 이내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1) 일반적인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1항)

구 분	내 용
현수막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면 이용 현수막 지정계시대 이용 현수막 자주 이용 현수막 건물의 가림막 이용 현수막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 내용만 표시 -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과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안 됨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의 수리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계시대 포함)과 현수막에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 금지

2)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2항)





구 분	내 용
게시시설 설치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p>※ 설치대상 건물의 벽면 등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p>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시시설은 가로 및 세로 크기는 해당 벽면의 폭(창문부분 제외)의 1/2 이내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창문부분 제외)의 1/5 이내
표시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게시시설은 건물 전체에 4개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시시설의 윗부분은 건물의 윗부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아래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 됨

3)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게시시설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 제3항)

구 分	내 용
설치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게시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10m 이내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
표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금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게시대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함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1개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금지 <p>※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 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수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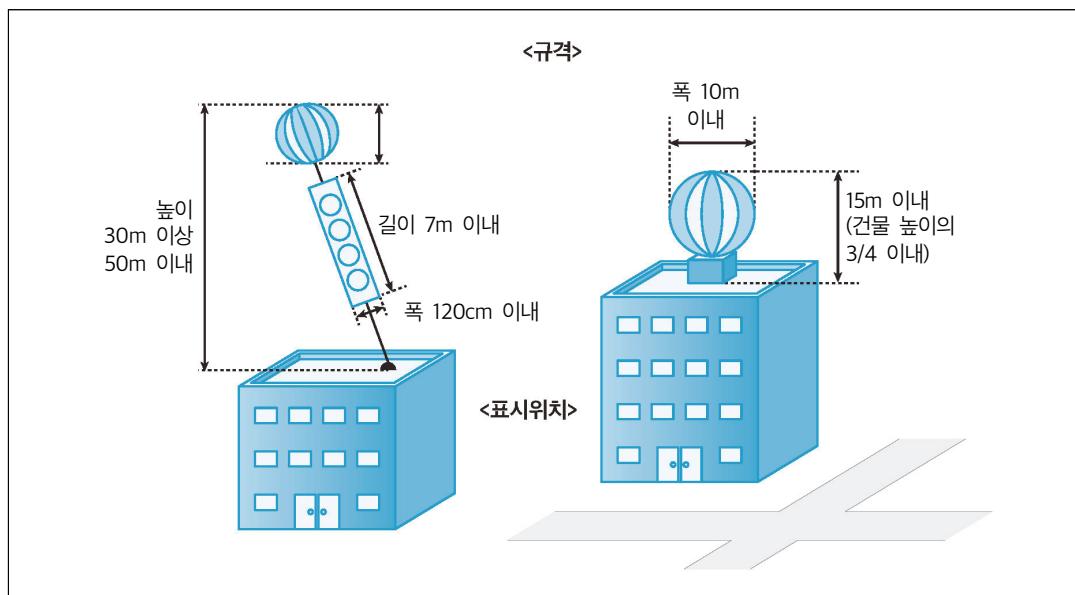
4)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및 그 지주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4항)

구 분	내 용
일반적인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는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
단독형 지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건물의 대지안의 빈 땅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 설치 지주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크기는 세로크기의 1/2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크기는 또한 같음) 그 건물에 입주한 업소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를 초과할 때마다 1개 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 가능 ※ 단독형: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
연립형 지주 · 게시시설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건물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빈 땅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크기는 6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로 설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만 업소마다 하나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 연립형: 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

5)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표시방법 (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제5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수막의 표시내용은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 현수막의 면적은 벽면 면적의 1/3 이내 표시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유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가능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 사용 금지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가능 그 밖에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제1항)

구 분	내 용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경은 5미터 이내 크기 7m와 폭 120cm 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가능 전체높이는 건물 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m 이상 50m 이내
표시방법	<p>① 수소 등 발화성 기체의 사용금지</p> <p>②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또는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p> <p>③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p> <p>〈예외: 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하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 -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을 개시하여 3개월 이내에 영업내용 등을 표시하는 경우 <p>④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km ※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 위 ③의 예외(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표시)의 경우에는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함.</p> <p>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도시 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시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따로 제한 가능</p> <p>⑥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안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km 이상 유지</p>

2)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제2항)

구 분	내 용
표시가능 건물	<p>①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 봄) 및 공업지역(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으로 봄)에 있는 건물 ※ 제외: 시·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p> <p>②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p> <p>③ 위 ②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p> <p>④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p> <p>〈예외: 표시할 수 있는 지역 외의 건물에 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 자기 건물: 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1/2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
표시가능 건물총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읍·면지역 제외): 4층 - 군(시의 읍·면지역 포함): 3층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고층수는 15층



구 분	내 용
총수 제한 없이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만 표시하는 경우
광고내용 표시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는 15m 이내 폭은 10m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해당 건물높이의 3/4 초과 금지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시·도 조례표준안(제5조제2항·제3항)의 옥상간판의 수평거리 등 규정을 준용 그 밖의 표시방법은 영 제1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의 규정을 준용 ※ 볼링핀 모형의 애드벌룬을 표시할 경우에는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

3)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3조제3항)

- 영 제16조와 시·도 조례표준안 제6조에서 규정한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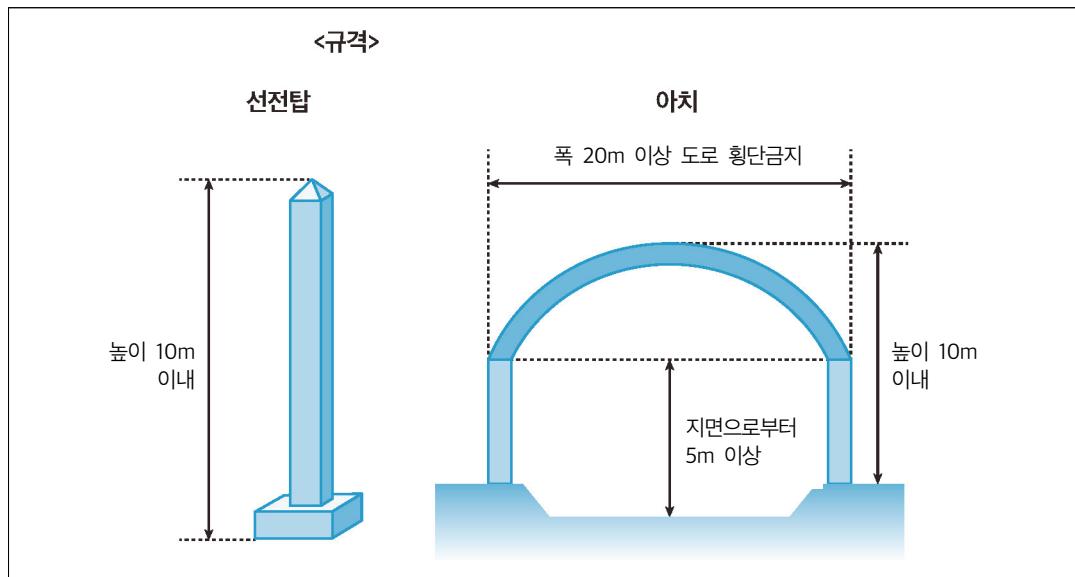
사. 벽보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4조)

구 分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

아. 전단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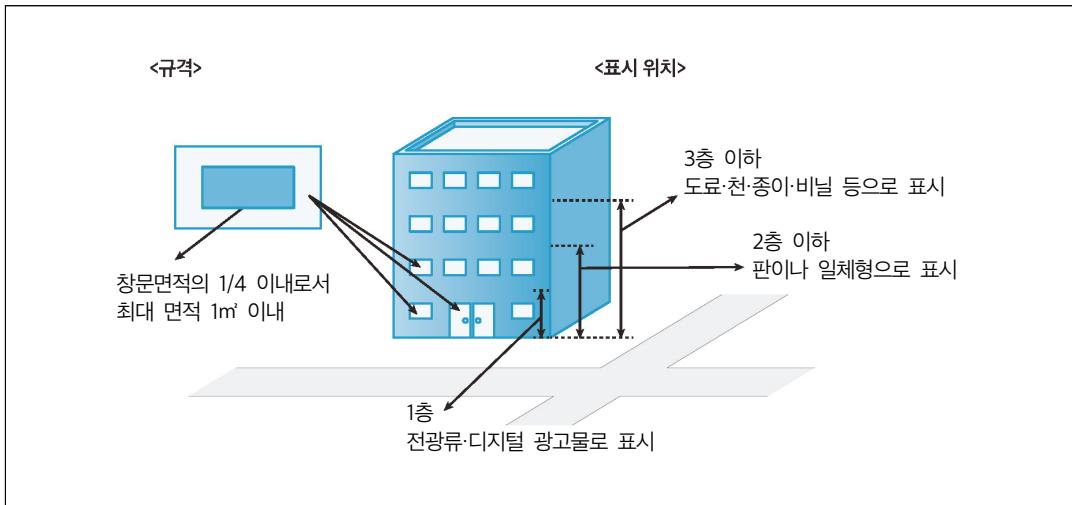
구 分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일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크기는 30cm 이내, 세로 크기는 40cm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단을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끼워 넣거나 차량 내부에 집어넣어서는 안 됨

자.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6조)



구 분		내 용
정의	선전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치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허가·신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 이내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아치 기둥의 길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상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가 정하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표시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 폭이 20m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 금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안전지대에 표시 금지

차.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시·도 조례표준안 제17조)



구 분	내 용	
정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허가 · 신고 사항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문 이용 광고물 중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신고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가사항이 아닌 모든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이내(허가 대상 창문 이용 광고물만 해당됨)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시규격은 해당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1/4 이내로서 최대 1m² 이내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가능 건물의 층수에 따라 광고물을 유형별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1층: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표시 건물 2층 이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 건물 3층 이하: 도료·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표시 	

헌법재판소 결정

① 비 영업용 자동차 광고 제한 합헌

- Q.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A.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함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광고행위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은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결정 2000헌마764 2002.12.18)

인천지법 판결

① 현수막 지정계시대에 공공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내용 표시 가능

- Q. 지정계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공공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 A. 국민의 현수막 표시는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로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비교·교량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 등에 위배 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현수막 지정계시대에 공공의 목적이나 영리적 목적이 아닌 때에는 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함.
- (인천지법 판결 98구666 1998. 9. 4)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1인이 2개의 사업자 등록 시 각각의 업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Q. 1인이 2개의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① ○○, ② ○○.com) 각각의 업소로 인정할 수 있는지
- A. 영 제12조제8항에서는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바, 간판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장소를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음. 일정한 장소에서 대표자 1인이 2개의 사업자로 등록 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현장 실태조사 등 사업자 등록의 하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 후, 관할청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같은 장소에서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가지 영업을 할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의 하자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② L자형 벽면이용 간판의 간판 총수량

- Q. 양쪽 벽면의 일부를 이용하여 L자 모양으로 광고 시, 간판 총수량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A. 광고물이 두 개의 벽면에 걸쳐있다 하더라도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면에 서로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간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옥외광고업자의 전기공사 시공 가능 여부

- Q. 옥외광고업자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업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 처리

Q.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1항에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공사표지판에 회사의 로고, 브랜드 등 광고물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적용

⑤ 주유소에 설치된 가격표시판에 대한 처리

Q.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이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제6항에서 「석유판매업자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가격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가격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4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내용 및 표시방법) 및 제7조(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 및 설치방법)에서 가격표시판의 표시·설치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가격표시판은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개별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⑥ 교통시설인 ‘지하차도’가 ‘지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Q. 교통시설인 ‘지하차도’가 ‘지하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시행령」에 ‘지하도’는 교통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도로(고속국도, 터널, 고가도로 등)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할 때, ‘지하도’는 지하보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⑦ 점멸 및 동영상 광고물을 차량 진행방향의 대각선으로 표시하는 경우, 높이 규정 적용 여부

Q.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하는 경우, 영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높이 규정(지면으로부터 10m이상)을 적용받는지 여부

A.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광고물의 내용을 운전자가 파악할 수 있거나, 광고물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시선을 끌 수 있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높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⑧ 정지화면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의 표출방식 적용 여부

- Q.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이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A.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그 광고물의 표출방식에 따라 운전자의 시선을 끌거나 교통신호등과 혼동을 주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 및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⑨ 건축물의 정면(파사드)에 대한 판단

- Q. 건축물의 정면 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 A. 「옥외광고물법」과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정면 및 측면 배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건물의 정면’이라 함은 「도로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하고 있으며, 건축용어 사전에는 건물의 주입구가 있는 면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건물의 주 출입구를 건물의 정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⑩ 공동주택의 외벽의 상호 등 표시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 Q.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브랜드, 로고, 동호수 표시(이하 상호 등)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 A.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는 상호 등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법」상의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처16-0710, 2017. 2.22자 해석 참조)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안내표지판 등)
- ② 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 외벽의 보기 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5

CHAPTER

표시방법 완화

1. 표시방법 완화(법 제3조제4항·영 제21조)
2.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영 제22조)
3.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법 제3조제7항·영 제23조)



제5장 표시방법 완화

1

표시방법 완화(법 제3조제4항·영 제21조)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관련 허가·신고의 기준 완화

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중 제외되는 지구·지역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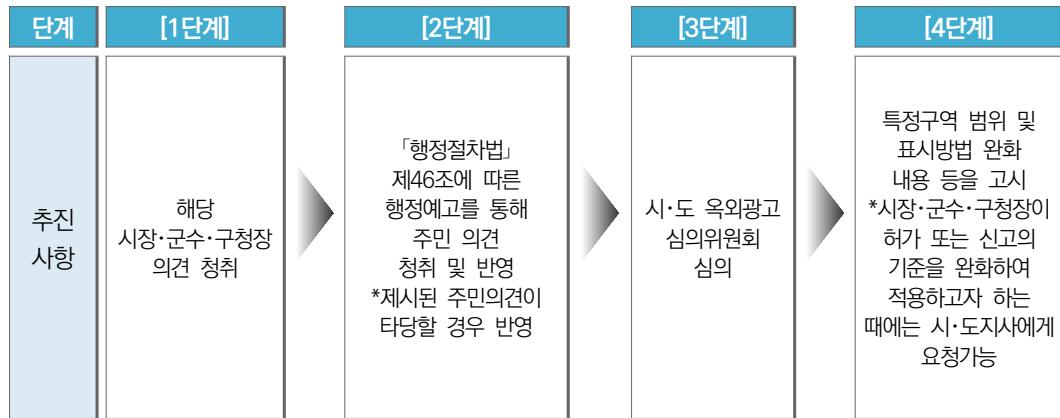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방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기준을 강화(법 제4조제2항)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허가·신고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특정구역에서는 허가·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완화하여 적용 가능



나. 표시방법 완화 지정절차와 내용(영 제21조·시·도 조례표준안 제18조)

1) 표시방법 완화 절차 및 내용(시·도 조례표준안 제18조)

-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제1항)



-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제2항)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시행일: 2022. 7. 12.]

2)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도 완화할 수 없는 사항(영 제21조제6항)

- 다음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
 -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됨(지면으로부터의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 가능)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

2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영 제22조)

가. 건물면적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한하는 특례지역(영 제22조제1항)(면적단위총량제)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이상인 지구만 해당)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시·도 조례표준안 제19조)

- ① 시·도지사는 대상지역(영 제22조제1항)에서 건물면적(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벽면의 면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을 고시
- ② 위 ①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
 - 광고물등의 종류
 -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건물의 범위 및 면적
 - 그 밖에 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필요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위 ①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국민생활 등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완화 특례(영 제22조제2항)

-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 추가 설치 가능
 - 간판 총수량 규정(영 제12조제8항)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함(입간판 1개 추가 설치 가능)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기준 규정(영 제16조제1항)

3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법 제3조제7항·영 제23조)

가. 대상 건물 및 제출자(일정 규모 이상 건물)

1)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건물

-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2)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자 및 제출처

- 제출자: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건물의 건물주)
- 제출처: 시장·군수·구청장(광고물등의 허가권자)
- 제출시기: 제출 대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광고물등(게시시설 포함)의 표시를 위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기 전에 작성하여 제출

3) 간판표시계획서에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함)가 포함되어어야 함

※ 간판표시계획서: 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

나.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물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함
※ 간판표시계획서는 건물에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제출 시 제재할 규정은 없지만 의무사항이므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허가나 신고신청 시 보완토록 반려 등 조치가능

대법원 판례

〈고시의 효력〉 대법원 2004. 4. 9선고 2003두1592 판결

① 고시가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사례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 Q. 시·군·구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특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 A.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경우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영 제25조제2항에서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령에서는 특정구역 해제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할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특정구역 해제 처분이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완화

- Q.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 A.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시행령 제21조제6항에서 표시방법 완화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6 CHAPTER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법 제4조)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영 제24조)
3.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4. 표시방법의 강화(법 제4조제2항·영 제25조)



제6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1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법 제4조)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금지·제한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영 제24조)

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 및 장소(영 제24조제1항제1호)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③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④ 「하천법」에 따른 하천
- 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⑥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 ⑦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 ⑧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 ⑨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 시설
- ⑩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
- ※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 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와 철도·고속철도의 경계선 주변에 대하여는 위 ①·②의 규정 적용
- ⑫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나. 금지지역·장소에도 예외적으로 표시가능 광고물등(영 제24조제2항)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지역·장소라 해도 자사광고 등 최소한의 광고물등을 표시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요인 해소
 - 자사광고
 -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지정게시대(현수막)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
 - 전기 사용 금지
 - 표시방법은 가로등현수기 표시기준(영 제29조제5항)을 준용

적용상 주의

- 금지지역·장소 등에 예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이라 하더라도
 - 영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 및 영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표시방법 등에 적합하여야 함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경우 영14조제3항·제4항 적용

다.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영 제24조제1항제2호)

- 각종 시설물의 보호와 효용성을 유지하고 도시미관 유지, 주거·생활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지정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 전봇대
 - 가로등 기둥
 -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 전망대 및 전망탑
 - 담장(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을 타리는 제외)
 -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시·도 조례표준안 제20조) —

- 횡단보도안전표시등
-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 교통안전시설물
- 낙석방지시설물
-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도를 포함)의 노면(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제외)



라. 광고물등의 유형에 따라 표시가 금지되는 건물(영 제15조제9호·시·도 조례표준안 제9조제6호)

- 옥상간판(영 제15조제9호)
 - 목조건물·가설건축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
- 돌출간판(시·도 조례표준안 제9조제6호)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건축법'상 가설건축물)
 - ※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m²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표시가능

3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가. 안전저해, 사행산업 등의 광고물(법 제5조제1항)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물과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

나. 광고내용에 대한 금지(법 제5조제2항)

1) 광고내용 표시 금지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 명백한 근거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거짓내용 등을 표현코자 하는 광고내용도 범죄행위(명예훼손·무고죄 등)에 포함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
-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2) 광고내용 표시 및 제작 금지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비판·불만 등의 표현내용은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사항이므로 표시 곤란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4

표시방법의 강화(법 제4조제2항·영 제25조)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관련 허가·신고의 기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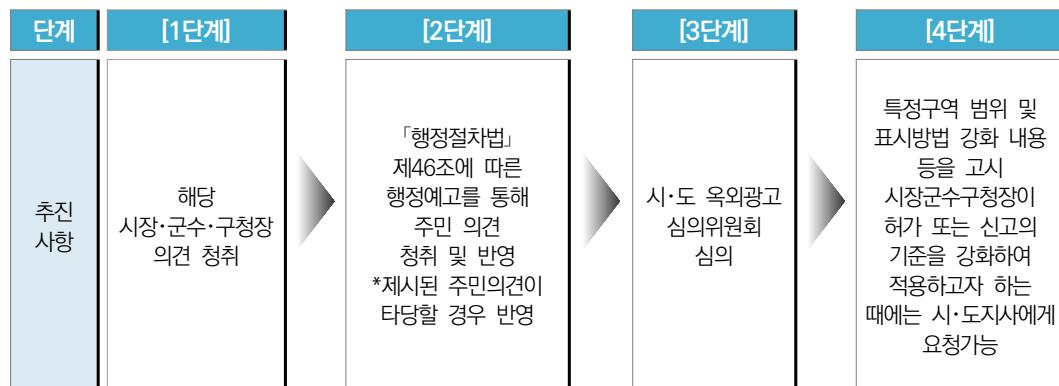
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강화 가능지역(특정구역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그 밖에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나. 표시방법 강화 지정절차와 내용(영 제25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

1) 표시방법 강화 절차 및 강화 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

-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제1항)





적용상 주의(영 제25조제4항)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광고물등의 표시관련 허가 또는 신고기준 강화)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제2항)

-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표시기간 또는 표시시간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도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있는 다음 사업장은 강화대상에서 제외(영 제25조제5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제3항)

-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소(수소연료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로 한정)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장
- 은행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 시·도 조례로 위임된 강화대상 제외 사업장(시·도 조례표준안 제21조제3항) —

-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 별표 1(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로 정한 사업장
-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육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별표 1]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시·도 조례 제21조제3항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산업·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및 대규모점포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 - 「항만법」에 따른 항만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驛舍)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 도로법령에 따라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대형승합차 10대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갖춘 관광휴게 시설에 한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관광·휴양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모 1만㎡ 이상의 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시·도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 명소 -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또는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관광시설 - 개별법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마을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공공·공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문화체육시설(도서관, 시민 회관, 종합운동장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제1종 박물관 및 미술관 - 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 「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 대사관, 영사관 등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법인묘지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일반병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교회, 순교기념지로써 당해시설물의 면적 이 500㎡ 이상인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적용 범위

- Q.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A. 「옥외광고물법」 제4조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 이용 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집합건물 간판표시계획 변경

- Q.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광고물을 이전하여 설치하고자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서면 동의 후 간판 표시계획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의 절차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간판표시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집합건물 공유부분 벽면에 이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합건물에 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판결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판표시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7 CHAPTER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 등(영 제26조)
2.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등(법 제4조의3)
3. 주민협의회의 운영(영 제27조)
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법 제4조의4)
5.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



제7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1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 등(영 제26조)

-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운영

가.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영 제26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나.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신청·결정(영 제26조제2항·제3항)

- 광고물등 표시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①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 ②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 ③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 ④ 주민협의회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위원의 성명·주소
- ⑤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 ⑥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 ⑦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 다음사항을 고시하여야 함
 -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 자율관리협정의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다. 자율관리협정 효력 및 변경 등(영 제26조제5항·제6항)

-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에게만 효력이 미침
- 주민협의회가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이 경우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 결정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를 준용
-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 등(법 제4조의3)

-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가.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대상 지역(영 제28조제1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 ③ 너비 30m 이상의 도로변
- ④ 광고물등 표시완화 및 강화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 ⑤ 위 ①부터 ④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나.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등(영 제28조제2항·제3항)

- ① 정비시범구역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 가능(이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 ②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③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는 위 ①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 지원가능
- ④ 위 ① 및 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정비시범지역 광고물등에 대한 지원(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제1항)

시·도지사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3 주민협의회의 운영(영 제27조)

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영 제27조제1항·제2항)

-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주민협의회의 대표자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



나. 주민협의회의 임무(영 제27조제3항)

- ①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 ②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 ③ 위 ①·②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다. 그 밖의 필요사항(영 제27조제4항)

-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4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법 제4조의4)

-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광고물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국제행사·연말연시 등)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한시적) 자유표시구역을 지정·운영

가. 자유표시구역 지정 대상 지역(영 제28조의2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 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
 - 시·도지사가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나. 자유표시구역 지정 절차 등

1)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법 제4조의4제1항·제2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자유표시구역 지정대상 지역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 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2) 자유표시구역 지정 절차 등

- ① 시·도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서 작성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위 ①의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신청을 위한 운영기본계획서를 작성,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
- ③ 시·도지사는 협의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서를 해당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④ 시·도지사는 심의결과 결정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
- ⑤ 시·도지사로부터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다음과 같이 게재 및 통지
 - 게재 및 통지 내용
 -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일
 - 게재: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통지: 즉시(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⑦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통지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유표시구역 지정사항을 14일 이상 게재

다.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법 제4조의4제7항·영 제28조의3)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이 게재 및 통지
 - 게재 및 통지 내용
 - 지정 취소할 자유표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자유표시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 예정일
 - 지정 취소되는 자유표시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 게재: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통지: 즉시(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를 통지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유표시구역 지정 취소사항을 14일 이상 게재

라.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 변경 등(법 제4조의4제6항·영 제28조의4)

- ① 운영기본계획 중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행정안전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간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위 ①을 제외하고 확정된 운영기본계획의 변경은 신규 지정절차 준용

마. 지정된 자유표시구역 운영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5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시·도 조례표준안 제22조)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 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Q. 간판정비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제1항에서 시장 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간판정비사업 시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비시범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8 CHAPTER

공공목적 및 기금 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법 제6조)
2. 적용배제(법 제8조)
3. 한국옥외광고센터(법 제11조의4)
4.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법 제6조의2)



제8장 공공목적 및 기금 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1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법 제6조)

가.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포함)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

※ 대상: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광진흥법」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영 제29조제1항)을 제외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및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를 적용함
 - 다만,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영 제29조제3항)은 예외

나.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영 제29조)

-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9조 제2항 공공단체)이 표시·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이라도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법 제3조, 제3조의2),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법 제4조), 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자유표시구역(법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다만,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표시·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영 29조 제1항 각 호의 광고물등이 표시방법을 만족하는 경우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사전에 관할 시장등과 협의를 거친 경우(제4항)에 가능



1) 표시방법을 만족하는 경우, 허가·신고,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가 등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등(1항)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간판($5m^2$ 이상 간판 제외)
-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시설물·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한 전기 미사용 안내표지판

2) 이 법령에서 정한 공공단체의 범위(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

3)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고,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사전에 관할 시장등과 사전 협의(4항)를 거친 후 국가등이 설치 가능한 공공목적 광고물등(3항)

- ①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 ※ 옥상·지주이용·벽면 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20/100$ 범위(시·도 조례에서 정함)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해야 함
- ②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부지 밖 설치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 ③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 ④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 ⑤ 대기 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⑥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 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 ⑦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한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⑧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m^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m^2$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
- ⑨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 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 ⑩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도로(「도로법」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 사용은 제외)
- ※ 국가등이 위 ①부터 ⑩까지의 광고물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 해야 함(제4항)
- ※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육교 현판은 영 제17조제1항라목 단서에 따라 편의 시설물(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지정이 불가함

4) 각종 행사·주요시책 등 홍보용 가로등 현수기 표시기준(제5항)

- ※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함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금지
 -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 초과금지
 -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cm 이상
 - 현수기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금지
- ※ 표시기간: 15일 이내(현수막 표시기간과 같음)(시·도 조례표준안 제12조)

5)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관련 추가사항(제6항·제7항)

-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표시방법 완화)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적용상 주의

-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 규정을 폐지한 법 개정(2007.12.21)과 시행령 개정(2008.7.9)으로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광고물의 일반적 설치기준,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공공목적 광고물과 일반 광고물 간의 법 적용의 이원화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다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이 제3항의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영 개정이후 허가·신고없이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표시된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불법광고물이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거나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적용배제(법 제8조)

- 가. 적용배제 이유
- 옥외광고물의 정의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문패·묘지비석, 표지석 등이나 국가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내용도 옥외광고물에 포함됨
 -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 법령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면 관례나 일상생활의 불편, 국가등의 목적수행의 애로, 행정의 효율성 저해 등 문제가 있으므로 허가·신고, 표시방법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정함
- 나.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이내)
- 관호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관례·honore·상례·제례 등과 직접 관련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영리목적은 불가)
 -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헌법상 학문과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여 학교나 종교활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와 학교 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현실성과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배제하는 것임
 - ※ 종교의식이란 기독교의 성탄절, 불교의 석가탄신일과 관련된 의식행사를 말함[기타 종교별 행사(부흥회, 전도대회 등 각종 집회) 제외]
 - 이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광고물들은 허가·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행사 등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과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있음
 - 법 제8조의 학교 및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들은 그 목적이 학문 활동이나 순수한 종교의식 활동의 것에 한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임
 - ※ 영 제24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학교·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학문이나 종교의식의 내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임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 1인 시위 과정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 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포괄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적용배제를 인정함이 타당함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한 현수막의 적용배제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
- ※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건물 축조를 계약한 시공자 간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집회는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운동으로 볼 수 없음
-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 투표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 현수막에는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함(영 제35조의2)
 - ※ 구체적인 정당 현수막 관리방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 라인」 참조

다.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으로 적용배제 대상(표시기간 30일 초과)

-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 ※ 마을명칭, 공원 잔디보호, 주택의 문패, 묘지비석, 표지석, 각종 시설물의 명칭, 경고·주의 내용 등에 관한 표시 등이 이에 해당됨

3

한국옥외광고센터(법 제11조의4)

가. 센터의 설립목적

- 옥외광고의 획기적 개선
-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전문적으로 지원

나. 센터의 임직원 채용 및 파견요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채용
-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 요청 가능



-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 건축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

다. 센터의 사업

- ① 옥외광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
- ② 신소재·신매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③ 광고물에 대한 경관·교통·안전 관련 영향평가에 관한 사업
- ④ 옥외광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 ⑤ 옥외광고 관련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 ⑥ 옥외광고에 관한 홍보, 마케팅 조사 등에 관한 사업 및 그 지원
- ⑦ 재원마련 옥외광고사업의 운영
- ⑧ 연구 용역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⑨ 광고물등의 안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⑩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 ⑪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⑫ 위 ①부터 ⑪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라. 센터의 운영 및 기타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한국옥외광고센터 설치
-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 등 관련 연구·조사를 다른 법률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 등에 우선하여 센터에 위탁하여야 함
- 센터의 옥외광고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다른 사업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처리 및 관리해야 함
-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 포함)
-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 회계사

의 회계감사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하면 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4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법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 광고물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 센터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
-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 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함

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광고물등의 설치기준(영 제30조제2항)

① 옥외광고사업용 광고물등: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홍보탑

※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별도로 규정(영 별표 3)

②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3년 이내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

※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협약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

④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음



나. 기금조성 광고물등의 변경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 등(영 제30조제2항)

- 위 가③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연장,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지원대상 주요 국제행사(영 제30조제1항)

-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함(2022.3.8. 기준 주요 국제행사)
 - 2022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신소재, 신기술 등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영 제30조제5항)

-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또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법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절차·방법에 따라 광고물등에 적용·사용될 수 있는 신소재, 신기술 또는 새로운 표시방법 등이 적용된 광고물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마. 옥외광고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영 제30조제3항·제4항)

- ①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② 위 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함

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영 제31조)

- ①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 비율 및 방법(영 별표 2 제2호·제3호)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 가. 광고물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의 설치·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제4호다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은 반납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 1)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 2)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대한 지원
 - 3)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
 -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
 - 2)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배분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법 제11조의 4 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
 -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
 -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맞추어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분 비율에서 각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 라.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는 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한다.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 수익금을 라목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려는 경우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지원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추가되어 해당 연도에 수익금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도, 시·군·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
-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④ 수익금을 사용·운용 후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별표 2 제4호)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 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는 제3호가목2)에 따라 배분받아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과 라목에 따라 반납된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는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배분받아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이 끝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 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 라.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사업의 운영·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법 제6조의2)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법 제6조의2제1항)

- 설치 목적: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운영
- 설치·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법 제6조의2제2항)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 수수료(제17조)
- 과태료(제20조)
- 이행강제금(제10조의3)
-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용도(법 제6조의2제3항)

- ①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 ②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 ③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④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위 ①부터 ④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법 제6조의2제4항)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함

법제처 법령 해석

① 적용배제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기간

-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집회 신고를 한 신고 기간 동안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지?
-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한 후에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집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집회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치활동의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실제 집회가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법제처 13-0524 2013.12.11)
※ 선거 후 담례 현수막은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게시 가능(공직선거법 제118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1인 시위 현수막의 적용배제 가능 여부

- Q. 개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 A.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 과정에서 광고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시위의 형태와 개별법령 등에서 금지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광고물을 표시·설치 한 경우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명시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포괄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② 적용배제 대상이 되는 노동운동의 범위

- Q.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 노동운동의 범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A.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배제 조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의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문제와 관련된 집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건물 축조를 계약한 시공자 간의 도급계약과 관련된 집회는 고용주와 노동자와의 관계로 볼 수 없어 노동운동으로 볼 수는 없음

③ 적용배제 대상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 쟁의행위가 포함되는지?

Q.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5호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 노동 쟁의행위가 포함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노동쟁의 중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동법 제8조의 적용을 받는지? 쟁의행위 신고시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방법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곳에 한정하여 현수막을 게첨하여야 하는지?

A. 법제처(법제처 13-0524)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4호를 해석하면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로써,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만 법 제8조의 적용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열리는 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일부분으로써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배제 조항을 적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쟁의행위더라도 쟁의행위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법 제8조제5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집회 또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한하여 신고기간 동안 적용배제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09

CHAPTER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법 제7조)
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의2)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영 제35조)



제9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법 제7조)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5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포함)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32조)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기관

- 시·도: 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군·자치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시·도, 시·군·구에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 설치

2)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 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5~15명
 - 위촉대상
 -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이어야 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1항)

-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옥외광고·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 사: 1명(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함)
- 임 기: 2년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위원장(의장)

※ 직무대행: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행

● 회의운영

- 개의·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름
- ※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참여 불가
-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4항)

● 회의안건 처리(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2항·제6항·제7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함

-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 이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함(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가능)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

나.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영 제32조제5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5항)

1)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 구성(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5항)

- 소위원회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 소위원회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 소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
- 소위원회 임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기능(영 제33조·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

1)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영 제33조)

- 이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시·도 조례표준안 제23조제1항)

- 이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2) 옥외광고심의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시·도 조례표준안 제24조제2항)

-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시·도지사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 •
제 9 장

에어컨
화장
아이언

2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의2)

- 설치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가. 구성

- 위원: 15명 이내
-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선출)
 - 위원장 임무: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및 회의의 의장
 - ※ 직무대행: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촉대상(다음의 대상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영 제34조제1항)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 광고물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축디자인 및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간사: 1명(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나. 심의사항

-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광고물 정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자유표시구역 관련 시·도지사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등이 하는 옥외광고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운영

- 개의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옥외광고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기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라. 위원의 해임 및 해촉(영 제34조의2)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위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임 및 해촉가능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옥외광고심의위원회·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영 제35조)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는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

대법원 판례

〈광고물 심의의 효력〉 대법원 2000.5.26. 선고97누15135 판결

- ① 미관지구 안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의 대상 및 효력
위와 같은 광고탑 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광고탑의 형태·색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대법원 판례

서 광고탑의 모양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시 검토되는 사항으로서, 위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위 같은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광고탑 축조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계획심의의 효력은 심의를 받은 것과 동일한 형태·색채 등의 모양을 가진 광고탑의 축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로 하여금 심의를 받은 건물의 옥상에 위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우선적으로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하거나 그로부터 수평거리 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옥상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가사 지방건축위원회가 광고탑 축조의 건축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옥상간판 사이의 수평거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이전에 그 설치허용 여부 등에 관하여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건축계획심의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②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가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기 위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에게 위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미관지구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광고탑 축조에 관하여 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건축계획심의를 받은 건물이나 그로부터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 제한 범위 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옥상간판 설치를 위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건축계획심의만을 받은 자로서는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허가, 부관(조건)의 효력〉 대법원 1995. 6.13. 선고, 94다56883 판결

①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 붙인 부관의 효력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②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 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③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채납하도록 한 허가조건의 효력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CHAPTER 10

안전점검

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2.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법 제9조제1항·영 제37조)
3.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법 제9조제2항~제4항·영 제38조)
4.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법 제9조의2·영 제38조의2)



제10장 안전점검

1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법 제9조제1항·영 제36조)

- ① 다음 어느 하나의 벽면 이용 간판(건물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②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 지주를 세워 표시한 연립형 돌출간판의 표시면적이 각각 1㎡ 미만이어도 게시시설 면적이 1㎡ 이상이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③ 옥상간판(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 ④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 경사면에 지주(2개 이상)를 사용하여 설치된 지주 이용 간판의 높이는 지주위치가 가장 낮은 지면과 가장 높은 지면의 평균위치로부터 산정
- ⑤ 높이가 4m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⑥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⑦ 특정광고물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
- ⑧ 위 ①부터 ⑦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위임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시·도 조례표준안 제25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것
-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법 제9조제1항·영 제37조)

가. 안전점검의 기준(영 제37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굽은 못을 말한다)·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흠,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	안전·미관·생활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나. 안전점검의 시기(영 제37조제2항)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예외〉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
-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 광고물등의 광고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님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다. 안전점검의 신청(영 제37조제3항)

- ① 신청기관: 시장·군수·구청장(허가·신고를 한 광역단위 광고물은 시·도지사)
- ② 신청시 첨부서류
 - 안전점검 신청서[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최초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 ③ 신청시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④ 수수료의 부과(법 제17조제3호)
 -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 ⑤ 검사필증 교부(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점검에 합격된 광고물등은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



3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법 제9조제2항~제4항·영 제38조)

가.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대상자(법 제9조제2항·영 제38조제1항)

-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 단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
 -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②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③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④ 그 밖에 위 ①부터 ③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등(법 제9조제3항·영 제38조제2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시·군·구 조례로 정함

다. 안전점검 업무 위탁받은 자의 지위 및 책임(법 제9조제4항)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임원과 직원 포함)는 공정하고 철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불법·부당한 행위 등 적발 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 대상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적용)

4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법 제9조의2·영 제38조의2)

가.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시기

- 실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허가·신고한 광역단위 광고물은 시·도지사)
- 점검시기: 연 1회 이상

나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점검시기
- 점검대상
- 점검방법

다. 기타

- 풍수해 등 대비 안점점검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는 이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안전점검의 위탁규정을 준용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11

CHAPTER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2.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법 제10조제7항·영 제39조의2)
3.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4.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5. 허가 취소 등(법 제13조)
6.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법 제14조)
7. 청문(법 제15조)
8. 벌칙(법 제17조의3 · 제18조)
9. 양벌규정(법 제19조)
10. 과태료(법 제20조)



제11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1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

- ①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등
 - ② 규격·색깔·모양·표시 또는 설치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
 - ③ 허가·신고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등
 - ④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
 - ⑤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정비시범구역·자유표시구역 내에서 정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광고물등
 - ⑥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
 - ⑦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광고물등 또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
- ※ 허가·신고배제 광고물등 중 위 ②·④·⑥을 위반한 경우 포함

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자(광고물등의 관리자등)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광고주
 -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대행사업자 포함)
 - 위반되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위반되는 광고물등”은 위 ‘가’에서 나열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광고물등을 말함



다. 조치방법

1)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를 조치하도록 계고(문서 등)

- 통상 계고기간 7일 내외

※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특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철거(법 제10조의2제1항)

2) 긴급한 경우 서면 계고없이 제거 등 직접조치 가능

- 명령 불이행 시
-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범죄행위, 음란·퇴폐적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추락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등
 - 주거 및 생활환경의 피해가 극심하여 누구나 긴급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

라. 조치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 위 '나'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마. 전화번호외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한 인적사항 요청(법 제10조제3항~제5항)

1) 요청기관 및 대상 광고물

- 요청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광고물: 허가·신고 기준 위반 및 금지광고물등에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등

2) 요청방법(법 제10조제3항)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 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 ①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 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음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10조제5항·영 제38조의3)

- 이의신청기관: 이용정지를 요청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
 - 결과통지
 - 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가능)
 - 통지내용: 이의신청 결과 및 이유 등
- ※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바. 기타 광고내용 등 심의요청(법 제10조제6항·영 제39조)

-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 가능
 -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법 제10조제7항·영 제39조의2)

가. 합동점검(법 제10조제7항)

- 목 적: 위반한 광고물등(불법 광고물등)의 정비
- 위반사항: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제3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제4조), 광고물 등의 자율관리구역(제4조의2)·정비시범구역(제4조의3)·자유표시구역(제4조의4), 금지광고물 등(제5조) 표시위반 등

나. 합동계획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등(영 제39조의2)

- 계획수립: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수립한 점검계획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점검계획 수립내용
 - 점검의 필요성
 - 점검 대상 지역
 - 점검 시기·방법 등
 - 점검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에 필요한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력사항
 -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다. 점검결과 및 조치(법 제10조제8항·제9항)

- 시·도지사는 합동점검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접 제거 등 필요한 조치(비용 청구 포함)를 취할 수 있음

3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가.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2)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② 위 ①의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함

적용상 주의

-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불법광고물이 계고기간 중 광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시장등이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계고 절차 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이러한 조치는 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조치하여야 함

나.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법 제10조의2제3항·영 제40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자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 광고주
 - 옥외광고사업자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란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음



(보관 시 위 ②를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 ④ 위 ③에 따라 제거된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거한 광고물등의 반환 등(영 제41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을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주소 및 생년월일과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라. 미반환 광고물 등의 귀속(영 제42조)

- 제거된 광고물등(매각대금 포함)에 대하여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 등을 반환 받을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해당 시·군·구에 귀속됨

4

이행강제금(법 제10조의3)

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광고물등

-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 대상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공

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 제외대상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나. 이행강제금의 최고액 : 500만원

-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함
〈예외〉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징수 제외

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계고 등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을 정하여 해당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해당 광고물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에게 문서로서 계고하여야 함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함

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등

-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는 서면·이메일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 이행강제금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제기 가능



※ 처분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이의신청을 받은 처분권자는 자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으로 결정

※ 「비송사건절차법」 관련조문 참조

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영 제43조)

-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② 위 ①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 포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함

※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영 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m^2$ 미만 2) 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3) 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4) 면적 $2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면적 $20m^2$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3) 연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4) 연면적 $2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연면적 $20m^2$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m^2$ 미만 2) 연면적 $3m^2$ 이상 $5m^2$ 미만 3)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4) 연면적 $1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연면적 $10m^2$ 초과하는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1) 연면적 $5m^2$ 미만 2) 연면적 $5m^2$ 이상 $10m^2$ 미만 3) 연면적 $10m^2$ 이상 $20m^2$ 미만 4) 연면적 $20m^2$ 이상 $50m^2$ 미만 5) 연면적 $50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연면적 $50m^2$ 초과 면적의 $1m^2$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등이 인정한 편의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m^2$ 미만 나) 연면적 $3m^2$ 이상 $5m^2$ 미만 3) 연면적 $5m^2$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연면적 $5m^2$ 초과 면적의 $1m^2$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들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들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들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사. 이행강제금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

-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5 허가 취소 등(법 제13조)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 및 신고 반려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 광고물등의 규격·색깔·모양, 표시 또는 설치방법 등과 관련한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위반한 경우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허가 취소에 따른 사전 조치사항(법 제15조제1호)

-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청문의 절차를 이행

다. 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조치 시정명령(법 제13조제2항·제3항)

- ① 조치사유
 - 위 '가'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광고물
 -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등

② 행정조치

- 위 ①에 해당되는 광고물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시정명령 미이행 시 해당 광고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요청받은 자(관계 행정기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함

6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법 제14조)

가. 등록취소대상(법 제14조 본문 단서조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 한 경우
-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등록취소 처분대상 행위(법 제14조 본문)

- 무허가(변경허가 포함)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무신고(변경신고 포함)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금지광고물등(법 제5조)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 옥외광고사업자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다. 영업정지등의 처분기간(법 제14조·영 제51조)

- 위반사항에 따라 일정기간(6월 이내)의 영업정지 조치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영 제51조 별표 7)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영 제51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제14조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제14조제2호			
가. 무허가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30일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이하	등록취소
나. 무신고 옥외광고물인 경우 (변경을 포함한다)		영업정지 15일미만	영업정지 15일 이상 3개월이하	등록취소
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조치		영업정지 30일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등록취소
라. 금지하는 지역·장소·물건에 옥외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영업정지 30일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이하	등록취소
마.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영업정지 30일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이하	등록취소
바.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옥외광고물인 경우		영업정지 30일미만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이하	등록취소
2의2.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2호의2			
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30일 미만		
나. 가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다.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3. 법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	법 제14조제3호	영업정지 3개월미만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이하	등록취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4호	등록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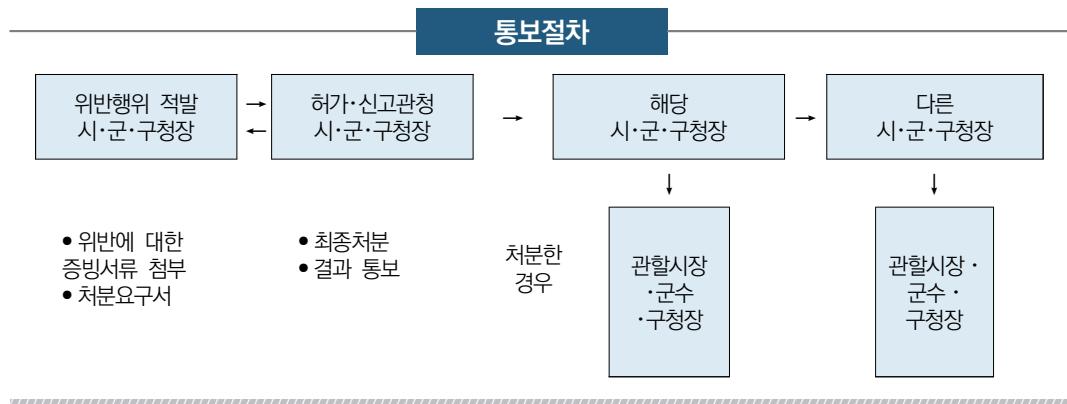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일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하여 적용한다.

라. 영업정지등 처분내용 통보(영 제52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 15일 이내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하는 내용은 옥외광고사업자의 성명·생년월일·업소명·처분 내용 및 처분일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시켜야 함

마. 관할구역 외에 등록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영 제53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대상 옥외광고사업자가 관할구역 외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를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 요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바. 등록취소 전 조치사항(법 제15조제2호)

-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절차 이행



7 청문(법 제15조)

••• 제11장

불법 행정처분의 제거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함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허가 취소
 -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실시
 - ※ 청문의 정의·목적
 - 정의: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목적: 불이익이 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 보호차원

8 벌칙(법 제17조의3 · 제18조)

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등 중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이나 제한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표시 가능한 광고물등은 제외)한 자

적용상 주의

- 동 대상지역·장소·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한 경우 고발 가능(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도 해당됨)

 - 다음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의 광고물등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과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사업을 한 자

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등 중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제외

9 양벌규정(법 제19조)

① 행위자 처벌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②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그 사용주를 처벌하는 경우

- 위 ①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10 과태료(법 제20조)

가.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대상

-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허가·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다.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55조)

-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를 (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 라.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사. 제2호가목·라목·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된 부과기준은 최근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아. 사목에 따라 기준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기준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m^2$ 이하 나) 연면적 $3m^2$ 초과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 연면적 $3m^2$ 초과 하는 면적의 $0.5m^2$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 연면적 $3m^2$ 초과 하는 면적의 $0.5m^2$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 연면적 $3m^2$ 초과 하는 면적의 $0.5m^2$ 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m^2$ 이하 나) 면적 $10m^2$ 초과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m^2$ 를 초과하는 면적의 $1m^2$ 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호 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 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20조제3항)

-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

〈참고〉 시·군·구 표준조례 과태료 개정안 (2022. 4)

① 시·군·구 표준조례 과태료 개정안 (제26조 관련 [별표 6] 개정)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법제처 권고안)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² 초과 0.5m² 이하는 0.5m²로 0.5m² 초과 1.0m² 미만은 1.0m²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려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 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입간판	및 제1호의2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가) 면적 1m ² 이하 나) 면적 1m ² 초과 2m ² 이하 다) 면적 2m ² 초과 3m ² 이하 라) 면적 3m ² 초과하는 면적 0.5m ² 당				
2) 현수막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가) 면적 3m ² 이하 나) 면적 3m ² 초과 5m ² 이하 다) 면적 5m ² 초과 10m ² 이하 라) 면적 10m ² 초과하는 면적 1m ² 당				
3) 벽보		20천원 30천원	30천원 40천원	45천원 55천원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참고〉 시·군·구 표준조례 과태료 개정안 (2022. 4)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40천원 50천원	50천원 60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9만원	49만원	99만원

② 법제처 해석례(2022. 4)

○ 질의요지 (참고 조례안 제26조 및 별표 6 관련)

-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구간별 최고 금액 이하로 부과해야 하는지, 이를 초과해서 부과해도 되는지?

<예시사례>

청소년 선도를 방해하는 내용(법 제5조제2항제3호 위반)의 연면적 3m²인 입간판을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경우 조례 표준안은 80만원, 시행령에서는 8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되어 있음. 이 때 위반한 자에게 160만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참고〉 시·군·구 표준조례 과태료 개정안 (2022. 4)

※ 관련 참고 조례안 규정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위반)	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14만원	18만원	23만원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49만원	64만원	84만원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80만원	105만원	135만원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 검토 의견

- 질의는 2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먼저 별표 6 제1호 가목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조례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으로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그 외의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조례를 포함한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제작만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 위반행위와 구성요건, 보호법익이 달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는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임.
- 한편,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하려는 경우,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참고 조례안의 과태료 금액은 법령의 위임 범위 내로 판단됨.
-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을 설치한 행위와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제작·표시한 행위는 각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2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은 하나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시행령에서 정한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과태료(80만원)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원칙(「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3조제2항 본문)이나, 이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조례안에 1.5배를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12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도 가능.

○ 정비 권고사항

- 참고조례안의 규정은 하나의 위반행위인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혼동될 수 있으므로, 2개의 위반행위가 드러나도록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 위반행위와 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위반행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 다만, 행안부는 중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처벌 비율은 1.5~2배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을 안내(2022.4.18.)



〈참고〉 시·군·구 표준조례 과태료 개정안 (2022. 4)

참고조례안	법제처 권고안
가. 제2호가목에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 를 적용한다.	가. 제2호가목에서 법 제3조 또는 법 제3조의2를 위 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 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 배를 적용한다.

마.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② 과태료 산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③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10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④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6833)

〈참고〉 「비송사건절차법」 관련조문

제247조(과태료사건의 관할)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① 과태료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 ② 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약식재판) ①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재판을 할 수 있다.

- ②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의 미납자에 대한 조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기간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불법 현수막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 Q. 불법 현수막 등을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하 종업원)이 직접 설치하는 자인 경우, 종업원에게 고발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A. 1.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법 제3조 및 제3조의2를 위반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및 법무부 해설집에 의하면, 실제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불법 현수막 등을 직접 설치한 자가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라도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종업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옥외광고물법」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라도 제17조의3(벌칙) 또는 제18조(벌칙)의 위반 행위를 하면 고발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한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도 고발 대상이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도 양벌 규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18조제1항제3호 : 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1항, 제5조(금지 광고물등) 제1항 또는 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② 불법 광고물 자동안내전화 관련 질의

- Q. 광고물(현수막, 벽보 및 전단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게시·배포한 자 등에 대하여 자동 전화안내 서비스를 통해 해당 광고물이 불법 광고임을 고지하고, 계속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 자동 전화안내 발신 횟수를 늘여갈 것임을 통보하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동전화 안내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업무 방해 등 타법에 저촉하는지)
- A.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 등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자동전화 안내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상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 및 허가 취소

- Q.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허가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 A.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동시에 하거나, 허가 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후 허가 취소를 하든지 등의 여부는 행정청이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법」의 목적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일지라도,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0. 11.25, 선고 2008다67828)는 판례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12

CHAPTER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영 제44조)
2.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제10조의4·영 제43조의2)
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11조의3)
4.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법 제12조)



제12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1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영 제44조)

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법 제11조제1항)

- 옥외광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처리기간: 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7일), 재발급(4일)
 -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 옥외광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징수(법 제17조제4호)

나. 옥외광고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시설 기준(영 제44조제1항)

- ① 기술능력(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 2022년부터 옥외광고사 2급은 단일등급(옥외광고사)으로 변경 운영
- ② 시설: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③ 기타
 - 위 ①의 자격증 소지자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함



-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②의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다. 옥외광고사업자의 결격사유(법 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제출서류(영 제44조제2항)

- ①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신고서)
- ② 위 ‘나’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 ③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②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함.
※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사본을 첨부도록 함

마.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검토사항(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허)(영 제44조제4항)

- 위 ‘나’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은 그 대표자)가 위 ‘다’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2조(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발급 및 게시(영 제44조제5항)

- 위 ‘마’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신청인에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발급
-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함

사. 옥외광고사업 변경등록(영 제45조)

-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신청서(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함

아.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영 제46조)

● 신청 사유

-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

● 재발급 신청 등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자. 옥외광고사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영 제47조)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폐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변경등록·휴업·폐업·재개업) 신청서(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휴업·폐업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 재개업 신고: 영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사본 1부

- ② 위 ①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서 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에 따른 통합 민원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 ①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등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위 ①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④ 위 ①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영 제44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2항을 준용함

차. 옥외광고사업 영업장소 출입 검사(법 제11조제7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음
- ※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함

2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법 제10조의4·영 제43조의2)

가. 책임보험 가입 대상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옥외광고제작업자, 옥외광고대행사업자
- ※ 광고물등의 제작·표시·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다.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
 -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총 15종)

※ 벽보, 전단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에서 제외

라.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망 및 후유장애):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재산상 손해의 경우(상해 및 재산상 손해): 1인 또는 사고 1건당 3천만 원

3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법 제11조의3)

가. 단체의 설립 목적·업무 및 회원(법 제11조의3)

1) 단체의 설립목적(법 제11조의3제1항)

-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 옥외광고물의 건전한 발전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품위향상 도모

※ 단체는 법인으로 함(법 제11조의3제2항)

2) 단체의 업무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위탁업무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회원의 자격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나. 단체의 정관기재 사항(영 제48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의 취득·상실 및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 회비에 관한 사항
-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단체 및 지부·지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다. 정관의 변경 등(법 제11조의3제6항·민법 제42조제2항)

- 정관의 변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설립 및 허가 포함)
※ 활동범위가 1개 시·도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설립 및 허가 포함)
-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민법」 제42조제2항(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4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법 제12조)

가. 교육의 목적(법 제12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사업 종사하는 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
※ 불법광고물의 난립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옥외광고사업자 자질향상 도모를 위함

나. 교육의 종류 등(법 제12조제3항·영 제49조)

1) 의무교육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신규로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2) 보수교육 등(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다. 교육의 실시(법 제12조제3항)

- ① 교육실시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적어 교육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른 시·군·구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라. 교육의 위탁(법 제12조제4항·영 제5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에 교육 위탁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함

마.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법 제20조제2항)

- 교육대상자(옥외광고사업자,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55조 별표 8)



법제처 법령 해석

①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 필요 여부

- Q.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A.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제처 17-0368 2017, 8, 2)

••• 제12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규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① 옥외광고사업 등록 가능 여부

- Q. 여러 회사 대표들이 각종 인·허가 관련 등록을 하여 사용 중인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 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별표 6의 시설기준에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제한 없음)”이라고 규정하면서,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은 상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별표 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가 입주해 있는 1개의 사무실에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동 사무실이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에 적합하고,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인 등록 가능여부는 관할청에서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옥외광고사업 등록 가능 여부

- Q. 타 지역(경기지역)에 공장 등록된 작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서울시 ○○구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소재지로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타 자치구에 영업장을 두고 ○○구 오피스텔(업무시설)에 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타 지역의 영업장 임대계약서를 ○○구의 옥외광고사업 등록 요건에 적합한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옥외광고물법」 제11조에서 옥외광고사업을 등록제로 규정한 취지는 무자격 사업자에 의한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 또는 사무실이 소재한 지역에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해야 할 것이며,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건물의 임대계약서에 대한 적격성 여부는 관할청에서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2023년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

CHAPTER 13

기타

1. 수수료 징수(법 제17조)
2. 주요 부칙



제13장 기타

1 수수료 징수(법 제17조)

가. 수수료의 종류

-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광역단위 광고물 포함)
-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수수료

나. 수수료 내역

- ① 광역단위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허가·신고 수수료
(시·도 조례표준안 제28조제1항, 별표 3)
- ② 광역단위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수료
(시·도 조례표준안 제28조제2항, 별표 4)
- ③ 허가의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납부(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함)
- ④ 위 ①내지 ③을 제외하고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

2 주요 부칙

1) 옥외광고업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 2004. 12. 23)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2008. 6. 24)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종전에 신고를 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나, 2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어야 함.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폐업하지 않는 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격이 없어도 등록한 것으로 봄

2) 기존 국가등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 2007. 12. 21)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표시된 광고물은 그 설치·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기존 광고물의 실명제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2007. 12. 21)

- 광고물 실명제는 2008.12.22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광고물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2008. 12. 22)에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건물의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법 부칙 제2조, 2011. 3. 29)

- 제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터 적용한다.

5)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 2016. 1. 6)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6)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2016. 1. 6)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7)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2016. 1. 6)

- 제1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8) 허가 또는 신고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법 부칙 제2조 2020.12.22)

- 제3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9)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8. 7. 9)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들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0) 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08. 7. 9)

-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1)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2016. 7. 6)

-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가로형 간판 중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표시한 세로형 간판 중 이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벽면 이용 간판으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신고에 따른 표시기간까지로 한다.
-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물로서 이 영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된 광고물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신고 없이 표시할 수 있다.

12) 옥외광고물의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2020.1.7)

-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 2021.5.4.)

-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광고물등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광고물등으로서 제4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나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2. 이 영 시행일에 허가등의 잔여 처리기간이 제1호의 기간보다 짧게 남은 경우에는 그 허가등의 처리기간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3조 2021.12.14.)

-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15) 항공기등의 표시 신고 및 항공기등에 표시한 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2조, 제3조 2022.12.6.)

-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광고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6) 지정계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대한 경과조치(영 부칙 제4조 2022.12.6.)

- 이 영 시행 당시 현수막 지정계시대에 표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에 관하여는 별표1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 옥외광고물법령 해설집

발 행 행 2023년 11월 발행

발 행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TEL: (02) 3274-2114

홈페이지 www.ooh.or.kr

조 판 및
인 쇄 세일포커스(주)
